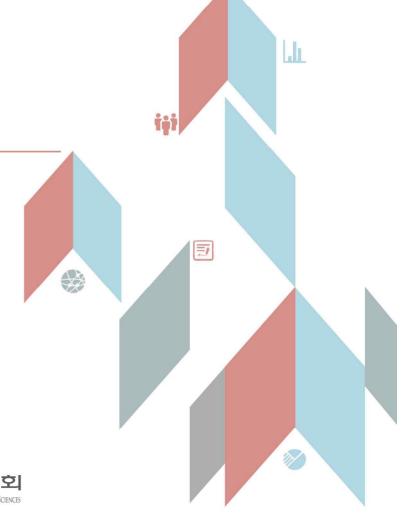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저출산 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 다양성 포용

Embracing Family
Diversity to Counter
the Transition to a Low
Birth Rate Society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란 외





# 저출산 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 다양성 포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란 외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저출산 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 다양성 포용

##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0-12-02	저출산 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 다양성 포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란 연구위원	주재선 연구위원 배호중 부연구위원 이진숙 연구원 임연규 연구원

# 제 출 문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저출산 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 다양성 포용"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권 인 숙

#### 1. 난제의 정의

- □ (난제) 초저출산 지속, 출산율 회복 전망 불투명
- □ 한국이 저출산 사회로 전환되었음을 인정하고, 저출산의 요인으로 최근 한국 가족의 변동으로서 가족 다양성 증가에 주목하였음.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안정적인 인구 규모 유지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을 정책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함. 또한 정책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데이터에 기반하여 제시하고 장애 요인과 실현 방안도 마련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출산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지금까지는 주로 경제적 상황에 초점을 두어왔다면 가족관계, 사회규범, 정책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 기반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 가족 변동, 즉 가족 다양성 증가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짐
- □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함
  - (Wh-Question) 개인의 다양성, 개인의 가족에 대한 선택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로 전환 된다면 인구 감소를 완화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가족에 대한 선택의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 2. 문제 진단 (1): 한국 사회 저출산 결정 요인
  - 가. 합계출산율 변동 요인 분해
  - 1) 유배우율와 유배우 출산율 효과
  - □ 출산율 요인분해를 통하여서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순효과를 살펴보면, 출산율이 혼인율의 저하로 야기되는 현상인지, 혼인 후 출산하는 부부의 비중이 줄어들어서 생긴 현상인지 알아볼수 있음

- □ 5년간의 출산율을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로 분해하여 각 요인의 기여도를 구한 결과, 유배우율 요인은 꾸준히 출산율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에 비해, 유배우 출산율 요인은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시기도 있고, 감소요인으로 작용한 시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에서 2018년까지는 유배우율 요인이 비교적 작은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유배우 출산율의 요인의 설명력이 -88.1에 달하여, 결혼하였지만 출산을 하지 않는 부부가 증가한 것이 출산율 저하에 큰 부분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유배우 출산율 요인이 2000년에서 2005년을 제외한 시기에서는 출산율의 급감을 막는 요인 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한편, 최근 3년간의 변화에서는 결혼 후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부부가 증가하였고, 이는 가족 구성에 있어 다양한 가치관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줌
- □ 최근으로 올수록 자식이 필수라고 여기는 가치관을 부정하는 태도가 젊은 연령층 사이로 확산되면 서, 결혼과 출산을 연속선상에 두지 않고 결혼만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유배우출 산율의 큰 감소가 출산율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가능. 즉, 저출산은 시대를 지나오면서 가족 가치관이 변화해온 결과임
- 2) 만혼화로 인한 출산연기효과(템포효과) 분석
- □ 템포효과는 결혼을 늦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출산율 변동 영향을 의미. 즉, 혼인연령이 높아져 출산이 늦어지면서 기간합계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효과임
- □ 15~49세 여성의 평균출산연령을 살펴보면, 1995년 27.92세 이래 매년 높아져 2018년 32.80 세로 4.88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혼인 연령의 증가는 첫째아 출산 연령을 가장 크게 늦추었음
  - 출생순위별 합계출산율은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2005년까지 감소하여 최저점에 도달하였고, 이후에 약간 증가되어 불규칙하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만혼화에 따른 출산 연기효과는 최근 들어 영향력이 감소함
  - 1995년~2018년의 템포효과 즉, 1995년 모의 출산연령이 2018년까지 유지된다고 하였을 때 2018년 조정합계출산율은 실측된 합계출산율보다 약 0.27~ 0.44명의 정도 더 높음

- 2016년부터 점차 그 영향력이 하락하여 2018년 0.27명으로 만혼화로 인한 출산율 하락 효과가 약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나. 한국의 지역별 성평등 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 (3개)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의 계수값을 나타냄
- □ (8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합계출산율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의사결정 분야'와 '복지 분야'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의 계수값을 나타내었고, '보건 분야(점)'와 '안전 분야(점)' 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보임
  -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 강화(보건·안전 분야)는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음. 출산을 둘러싼 안전한 환경 구축은 모두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숙제임
  - 성평등주의적 문화/사회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사결정 분야'의 경우 아직까지 우리사회의 성평등을 둘러싼 사회시스템적 측면이 출산율의 반등을 이루어 낸 서구사회만큼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음
- □ 성평등 수준(성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
  - 지역성평등지수와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이나 '의사결정 분야' 등 성평등한 사회문화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표의 경우 적어도 현재까지는 합계출산율과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살핀 연구에서는 U자형의 관계를 제시하였는데 한국 또한 그러한 변화양상을 따를지 귀추가 주목됨
- 3 문제 진단(2): 한국 가족 다양성 증가와 저출산
  - □ 최근 한국 가족의 변동은 가족 다양성 증가로 요약될 수 있으며 다음 4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첫째, 가족 형성 기피로 비혼 독신이나 비혼 동거가 증가하고 있음. 둘째, 가족 구성의 다양화임. 1인 가구의 급증, 무자녀 부부의 증가 등 가족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음. 셋째, 가족 관계에서 개인 가치 중심으로의 변화임. 집단으로서 가족중심주의가 사라지고 개인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넷째, 가족문화의 변화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족중심주의적 사고,확대가족 기반 문화,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 최근 한국 가족 다양성 증가는 한국 사회 저출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 가족 형성 기피, 가족 구성 다양화는 낮은 출산율의 요인이 되고 있음은 확인된 사실임
- 가족 관계에서 개인가치 중시 역시 집단으로서 가족보다 개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함을 의미하며 결국 저출산의 요인으로 작동함. 즉 가족보다는 개인을 중심으로 사고하 기 때문에 결혼이나 자녀출산을 기피하게 됨. 또한 확대가족에 기반하거나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한 거부는 결혼 기피로 이어지고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됨
- 가족 다양성 증가 현상은 세대별로 볼 때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확산되고 있음

#### □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가족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실정임

- 민법상 기족의 범위, 법률혼에 기반한 가족만 인정하는 법과 제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저출산 심화에 따라 가족 다양성 논의는 비혼동거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가족 다양성 포용은 한국 사회 전반의 다양성 증가 및 다양성에 대한 포괄적 인정과 수용이라는 인식 전환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함
- 따라서 개개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도 수용되는 사회, 가족 다양성 포용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사회가 될 때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감소될 수 있을 것임

#### 1. Definition of Challenging Issues

- ☐ Challenging issues: continued lowest-low fertility and uncertain prospect of the recovery of fertility rate
- ☐ Recognizing South Korea's transition to a low fertility society, this study takes notice of a recent change in Korean families, specifically, an increase in family diversity, as a factor for low fertility. In this context, the study aims to propose an inclusive policy on family diversity as a policy alternative in order to maintain the population size of South Korea in a stable manner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n response to the nation's low fertility rate. The study also aims to present specific grounds for the policy alternative based on data, identify obstacles to implementing the policy, and prepare ways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policy.
  - O If previous studies have largely focused on economic factors influencing women's choice of childbirth, this study is based on the viewpoint that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take into consideration family relations, social norms, and policy factors. As such, the study is distinctive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recognizes the necessity for implementing an inclusive policy on family diversity in order to solve the low fertility issue arising from the change in Korean families, that is, an increase in family diversity, and aims to provide a basis for the policy.

#### ☐ Research questions

O To attain this goal, this study set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If the country shifts toward an inclusive society that accepts the diversity of individuals and their family choices, can it slow down the decline in population? If this is the case, what policy will there be to embrace the diversity of family choices?

# 2. Problem Assessment (1): Determinants of Low Birth Rate in Korean Society

가. Factor Analysis of Changes in Fertility Rate in Korean Society
1) Effects of decomposition of fertility rate
When the study examined the net effects of factors influencing fertility rates through a decomposition of fertility rate, it was possible to find out whether the decline in the fertility rate was caused by a decrease in the marriage rate or by a reduction in the proportion of couples who had babies after marriage.
☐ To decompose the fertility rate, it was necessary to identify the size of women of childbearing age, the size of women with a spouse, and the size of women who gave birth.
<ul> <li>To this end, the study used the data as follows: The size of women in childbearing age was identified from the Registered Resident Population by Year.</li> <li>The size of women with a spouse was identified from the Population Census at the interval of five years, but the figure for 2018 was estimated as there was no data for the year.</li> </ul>
O The size of women who gave birth was deemed as the number of newborn babies from the Population Trend Survey by Year.
According to the result of estimating the contribution of each factor by decomposing the fertility rates for five years into factors of nuptiality and marital fertility rates, the nuptiality rate steadily affected the decline in the fertility rate, whereas the marital fertility rate acted as an increasing factor of the fertility rate at times yet as a decreasing factor at other times.
O The factor of the nuptiality rate showed a relatively small impact on the fertility rate from 2015 to 2018. However, as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arital fertility rate reached minus (-) 88.1, it was found that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ouples who got married but did not have babies accounted for a large portion of the decline in the fertility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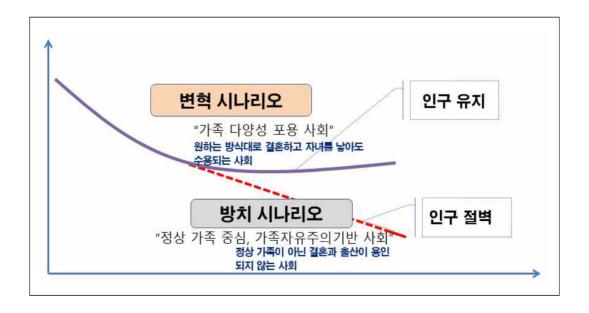
O While the marital fertility rate was identified as a factor that prevented a sharp fall
in the fertility rate in other periods than 2000 through 2005, changes in the recent
three years showed a rise in the number of couples who chose not to have babies
after marriage. This is to say that a mixture of diverse values existed in the family
composition.
$\square$ In more recent years, an attitude has spread among young people that denies the value
of having children as a must. With this change in attitude, a culture has been formed
that allows them to choose marriage only without keeping marriage and birth in line.
As such, it is possible to interpret that a big decline in the marital fertility rate had a
decisive impact on the decrease in the fertility rate. In other words, low fertility is the
result of changes in family values with the passage of time.
2) Birth Postponement Effect (Tempo Effect) Due to Late Marriage
☐ The tempo effect refers to the impact of late marriage on changes in the fertility rate.
That is, the birth postponement due to a higher marriage age had an effect of temporarily
lowering the period total fertility rate.
□ When the mean age at childbearing of women aged 15 to 49 was examined, the mean age grew higher every year from 27.92 years old in 1995 to 32.80 years old in 2018, an increase of 4.88 years old.
O The increase in their age at marriage had the greatest impact on postponing the birth of the first child.
O The birth-order specific total fertility rate fell to reach the lowest point in 2005 regardless of birth order, but then slightly rose to show irregular changes.
☐ The late marriage recently had a less impact on the effect of birth postponement.
O Supposing that the age of mothers at childbearing in 1995 remains the same until
2018, the tempo effect from 1995 to 2018, or the adjusted total fertility rate in 2018,
was higher than the measured total fertility rate by approximately 0.27-0.44 person.
, , , , , , , , , , , , , , , , , , , ,

- With a gradual reduction in its impact since 2016, the late marriage had a slightly less effect on lowering the fertility rate by 0.27 person in 2018.
3) Impact of Korea's Regional Gender Equality Index on Fertility Rate
□ According to Model I that analyzed only gender equality levels by (eight) area with total fertility rates as a dependent variable, 'decision-making area' and 'welfare area'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 coefficient, while 'health area' and 'safety area'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coefficient.
$\square$ A continued interest in gender equality levels and fertility rates is needed.
<ul> <li>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that statistically analyzed the relations between the Regional Gender Equality Index and total fertility rates, indicator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gender equal social culture, including 'gender equal social participation domain,' 'gender equal awareness and culture domain,' and 'decision-making area,' were found to have had negative (-) relations to total fertility rates at least until now.</li> <li>As mentioned earlier in the footnote, the study that examined the relations between the spread of gender equalism and fertility rates presented U-shaped relations. In this regard, it will be interesting to see whether South Korea will follow suit.</li> </ul>
3. Problem Assessment (2): Increase in the Diversity of Korean Families and
Low Fertility
☐ Recent changes in Korean families are epitomized by the increase in family diversity,
and such changes can be identified from the following four aspects.
O First, never-married singles or never-married cohabiting couples have increased in number due to the trend of avoiding family formation. Second, family composition has diversified with a sharp hike in one-person households and an increase in couples without children. Third, values have changed from family relations to individuals. While the focus on family as a group has disappeared, a stronger trend

of individualism has appeared instead. Fourth, family culture has changed largely among younger generations with a strong tendency of refusing the family-centered way of thinking, extended family-based culture, and patriarchal family culture. ☐ The recent increase in the diversity of Korean families is closely related to the low fertility in Korean society. O It is a confirmed fact that the avoidance of family formation and the diversification of family composition have served as factors for low fertility rate. O The shift of focus from family relations toward individual value also implies that there has been a growing tendency of prioritizing the individual before the family. This eventually contributed to the low fertility rate. In other words, because young people attach more importance to the individual than the family, they tend to avoid marriage or childbirth. Furthermore, their refusal of a family culture based on the extended or patriarchal family model has led to the avoidance of marriage, ultimately having a negative impact on fertility rate. O Observed from the generational aspect, the phenomenon of an increasing diversity in families has spread largely among younger generations. ☐ However, Korean society still shows low acceptance of family diversity. O The scope of family in its Civil Act and the approval of families based on legal marriage alone in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have yet to be improved.

- O With Korea's fertility rate ever falling, the discussion on family diversity has been centered mostly on the issue of never-married cohabitation. However, inclusion of family diversity should b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shifted perceptions that there is an increased diversity in the overall Korean society, and thus diversity should be recognized and accepted in a comprehensive manner.
- O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shift toward an inclusive society that accepts family diversity, that is, a society that accepts the individual choices of marriage and childbearing. When the nation becomes such a society, the tendency of avoiding marriage or childbirth will decrease.

- 1. 미래 사회 정책 목표 "가족 다양성 포용 사회"
  - □ (저출산 요인 진단) 가족 다양성 수용성이 낮은 한국 사회
    - 정상가족 중심 : 한부모 가족 등 가족형태에 따른 사회적 차별, 법률혼에 기반한 가족만 인정 등
    - 가족중심주의 문화 : 일상생활에서 가부장적 가족문화, 확대가족 중심 가족문화 지속, 청년 세대의 결혼 및 출산 기피 증가
    - 가족자유주의(familial liberalism) 정치체제와 사회정책 체제 : 경제적 부양과 돌봄에 대한 가족책임 전제, 가족계층에 따른 불평등 심화, 재생산 위기초래
  - □ 미래 사회정책의 목표는 가족 다양성 포용 사회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헌법 제36조에 의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사회
    -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개인의 가족 구성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 가족계층에 따른 불평등이 완화되어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는 사회



- 2.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
  - □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는 다음 [그림 1]과 같음

#### [그림 1]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과제

가족 구성	□ 가족 구성에 대한 권리 포괄적 인정	법률혼이외의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하도록 법제도 개선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대한 조항 폐지
	프로크 전·8	• 가족 변동에 따른 친자법 개정 방향 검토 및 개정안 마련
	☑가족 형태에 따라	가족형태에 따른 낙인이 없도록 관련 법안 개선     가족형태별 지원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대응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보장	• 가족형태에 따른 자녀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해소
가족 관계 및 문화		•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남아 있는 부계혈연기반 법제도 개선
	③ 남성과 여성의 가족 내 불평등 해소	성평등한 가족의례(명절문화, 장례, 제례 등)를 위한 제도 개선     남녀 동등한 돌봄에 대한 권리 및 기회 보장 방안 마련     가부장적 가족 호칭 개선 등 성평등한 가족 문화 조성
	a 가족내 개인 존중	• 민주적인 부모 자녀 관계 형성 및 확산 방안 마련
	4 기숙대 개인 근공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가족문화 개선 방안 마련     개인 가치 존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등 인식 개선
가족기능	⑤ 가족의 경제적 부양과	• 가족 형태별 소득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
	돌봄 기능 지원	• 부모 부양 기능 약화에 따른 노인 소득 보장 제고 • 가족 돌봄의 사회화 확대 - 사득 교차 기소 화용 토보 지의 바이 대령
		• AI 등 과학 기술 활용 돌봄 지원 방안 마련

#### 3. 정책 대안 추진 방안

- 가. 추진 과제의 우선 순위
- □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추진 과제를 필요성을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면 다음 〈표 2〉와 같음
  - (정책 방향 1) 가족 구성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인정에서는 법률혼 이외의 가족을 가족을 인정하도록 법제도 개선은 이미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책대안으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함. 그러나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대한 조항 폐지, 친자법 개정 과제는 장기적으로 대안 마련 및 사회적 합의 도출 등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임
  - (정책 방향 2)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 영역에서는 가족형태별 지원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대응, 가족 형태에 따른 자녀 사회적 차별 및 편견해소 과제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이 없도록 관련 법을 개선하여야 할 것임

- (정책 방향 3) 남성과 여성의 가족내 불평등 해소 영역의 경우 남녀 동등한 돌봄권 및 기회 보장은 제도 개선 등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가족문화 구조 전반에 걸친 인식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부계혈연기반 법·제도 개선이나 성평등한 가족의례, 성평등 가족문화 등의 추진 과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로 장기적이 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정책 방향 4) 가족구성원 간의 평등한 관계에서는 민주적인 부모자녀관계 형성 및 확산 방안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개인가치 존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등 인식 개선이나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가족 문화 개선 방안은 인식 관련 변화가 필요하여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장기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방향 5) 경제적 부양과 돌봄 기능 약화에 대한 대응 과제는 5개 과제 중 AI 기술을 활용한 돌봄지원 방안마련 과제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과제임. AI 기술을 활용한 돌봄 지원 방안 마련 과제는 관련 기술 발달과 상용화 등이 요구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표 2〉 추진 과제 로드맵

	단기	장기
가족구성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인정	• 법률혼 이외의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하도 록 법제도 개선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대한 조항 폐지     가족변동에 따른 친자법개정 방향 검토 및 개정 안 마련
가족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	가족형태별 지원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대응     가족형태에 따른 자녀 사회적 차별 및 편견해소	가족형태에 따른 낙인이 없도록 관련법 개선     가족형태에 따른 자녀 사회적 차별 및 편견해소
남성과 여성의 가족내 불평등 해소	● 남녀 동등한 돌봄에 대한 권리 및 기회보장 방안 마련	부계혈연기반 법·제도 개선     성평등한 가족의례를 위한 제도 개선     기부장적가족호칭개선 등성평등 가족문화조성
가족구성원 간의 평등한 관계	• 민주적인 부모자녀관계 형성 및 확산방안 마련	개인가치 존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등 인식 개선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가족문화 개선 방안 마련
경제적 부양과 돌봄 기능 약화 대응	가족 형태에 따른 소득불평등 해소방안 마련     부모부양기능 약화 대응을 위한 공적 노인 소득보장 제고     노인돌봄 사회화 확대     자녀돌봄 사회화 확대	● AI 기술을 활용한 돌봄지원방안 마련

- 나. 추진 과제의 실현 가능성
- □ 추진 과제에 대하여 실현 가능성과 혁신성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음
- □ 혁신적 과제로 구분한 사유
  - 한국 사회는 혈연 중심 가족 문화가 뿌리깊으며, 특히 혈연중에서도 부계 중심인 가부장 문화구조가 가족문화 전반에 자리하고 있음
  -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대한 조항 폐지, 가족 변동에 따른 친자법 개성 방향 검토 및 개정안 마련 과제의 경우 혈연을 중심으로 한 부모 자녀관계 및 가족의 범위 개념에 있어서 근본적 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혁신적인 대안임
  - 또한 법률혼 이외의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하도록 법제도 개선 과제 역시 비혼 동거 가족을 주요 이슈로 하고 있으나 향후 공동체 가족이나 동성애 가족에 대한 포함 여부 문제로 쟁점화 가능
  - 남성과 여성의 가족내 불평등 해소는 위한 과제에서 부계혈연기반 법제도 개선, 성평등한 가족의례 관련, 성평등 가족문화 조성 등의 과제 또한 가부장적 가족 문화에 대한 근본적이 고 혁신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는 과제들임
  - AI 기술을 활용한 돌봄 지원 방안 마련 과제의 경우도 혁신적인 기술 발달을 전제로 가능한 과제임

#### 〈표 3〉 추진과제의 실현가능성

	실현가능한 대안	혁신적인 대안
가 <del>족구성</del> 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인정		<ul> <li>법률혼이외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하도록 법제도 개선</li> <li>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대한 조항 폐지</li> <li>가족변동에 따른 친자법개정 방향 검토 및 개정안 마련</li> </ul>
가족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	<ul> <li>기족형태에 따른 낙인없도록 관련법 개선</li> <li>기족형태에 따른 자녀 사회적 차별 및 편견해소</li> <li>가족형태별 지원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대응</li> </ul>	
남성과 여성의 가족내 불평등 해소	● 남녀 동등한 돌봄에 대한 권리 및 기회보장 방안 마련	<ul> <li>부계혈연기반 법제도 개선</li> <li>성평등한 가족의례를 위한 제도 개선</li> <li>가부장적 가족호칭개선 등 성평등가족문화 조성</li> </ul>
가족구성원 간의 평등한 관계	<ul> <li>민주적인 부모자녀관계 형성 및 확산방안 마련</li> <li>개인가치 존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등 인식 개선</li> <li>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가족문화 개선 방안 마련</li> </ul>	
경제적 부양과 돌봄 기능 약화 대응	<ul> <li>기족형태에 따른 소득불평등 해소방안 마련</li> <li>부모부양기능 약화 대응을 위한 공적 노인소득보장 제고</li> <li>노인돌봄 사회화 확대</li> <li>자녀돌봄 사회화 확대</li> </ul>	● AI 기술을 활용한 돌봄지원방안 마련

l. 서론 ······ 1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추진 개요 6	
1. 연구 내용 6	
2. 연구 방법 7	
3. 연구 흐름도 8	
II. 한국 사회 저출산 요인 분석······ 9	)
제1절 한국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 9	
제1절 한국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       9         1.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9	
1.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9	
1.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 9 가. 합계 출산율 변동 ····· 9	
1.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9         가. 합계 출산율 변동       9         나. 연령별 출산율 변동       11	
1.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9         가. 합계 출산율 변동       9         나. 연령별 출산율 변동       11         2. 합계출산율 변동 요인 분해       13	
1.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9         가. 합계 출산율 변동       9         나. 연령별 출산율 변동       11         2. 합계출산율 변동 요인 분해       13         가. 유배우율       14	
1.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9         가. 합계 출산율 변동       9         나. 연령별 출산율 변동       11         2. 합계출산율 변동 요인 분해       13         가. 유배우율       14         나. 유배우 출산율       18	

1. 저출산의 심화와 지역단위에서의 출산율 연구의 필요성	30
2. 「지역성평등지수」에 대한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32
가. 「지역성평등지수」	32
나. 선행연구 검토	35
3. 자료구축과정 및 분석 방법	37
가. 자료 구축과정	37
나. 분석방법	37
4. 분석 결과	38
제3절 소결 및 제언	46
1. 출산율 결정 요인 분석	46
2. 지역성평등 수준과 출산율 분석	47
가. 자료의 한계	47
나. 해석상의 주의점	47
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48
Ⅲ. 한국 가족 다양성 증가와 저출산	51
제1절 한국 가족의 다양성 증가와 저출산의 관계	· 51
1. 가족 다양성 증가	51
가. 가족구조의 변화	51
나. 가족가치관과 가족관계의 변화	53
2. 가족 다양성 증가와 저출산의 관계	57
제2절 가족 다양성 포용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해외 사례	59
1. '상대적 고출산' 국가와 초저출산 경험 국가 간 비교	59
2. 해외국가 가족 다양성 포용 수준과 출산율	59

가. 프랑스의 PACS 도입과 혼인율	)
나. 스웨덴의 비등록 동거에 관한 보호 법률63	}
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변화와 출산율 64	ļ
제3절 요약 및 시사점65	;
IV. 저출산 사회 대응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제안 ····· 67	7
제1절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방향 67	,
1. 미래 사회정책의 목표67	7
2.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방향68	}
3.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진단70	)
제2절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과제 72	<u> </u>
1.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5개 영역별 추진 과제 72	)
2.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추진 과제에 대한 전문가 진단 75	5
제3절 추진방안 77	,
1. 추진 과제 로드맵 77	7
2. 추진 수단	)
3. 장애 요인 및 대응 방안 80	)
■ 참고문헌 ······ 83	}
보론. 적정인구 개념과 가족 다양화 시대의 정책적 함의 89	9
제1절 적정인구의 개념과 유형 89	)
1. 적정인구 개념	

2. 적정인구의 유형	89
제2절 적정인구 논의의 한계	93
제3절 적정인구 논의의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에 대한	· · · 함의 ······ 94

# ▋표 차례▮

⟨丑	-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10
⟨丑	II-2〉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 변동 ······12
⟨丑	Ⅱ-3〉 연령별 출산율의 변동이 합계출산율에 변동 영향에 미친 기여도
⟨丑	II-4> 15~49세 여성의 유배우율 변동 추이 ······17
⟨∄	-5> 15~49세 여성의 유배우 출산율 변동 추이 ·····19
⟨∄	II-6〉 합계출산율 변화에 대한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의 기여도 ······22
⟨∄	-7> 15~49세 여성의 출산순위별 평균출산연령과 합계출산율······25
⟨∄	-8> 15~49세 여성의 합계출산율과 조정합계출산율 비교 ······27
任	II-9> 2018년 「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 분야 및 지표 구성 ·······33
⟨∄	-10>「지역성평등지수」의 특징 요약······35
任	II-11〉 분석에 이용한 변수설명과 기초통계량······39
纽	-12>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40
任	Ⅱ-13〉(3개)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합계출산율 간의 패널다중회귀분석 추정결과42
纽	-14> (8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합계출산율 간의 패널다중회귀분석 추정결과 ················44
纽	III-1〉 세대별 가구구성분포 ······52
纽	Ⅲ-2〉가구원수별 가구 분포53
纽	Ⅲ-3〉 결혼에 대한 태도(1998년, 2018년)54
纽	Ⅲ-4〉 결혼은 당사자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된다 반대 비율-연령별57
纽	IV-1〉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방향
⟨丑	Ⅳ-2〉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추진과제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진단
⟨丑	Ⅳ-3〉추진 과제 로드맵
⟨₩	Ⅳ-4〉추진과제의 실현가능성
⟨丑	IV-5〉 추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80

##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 process ·····	8
[그림	-1 ] 합계출산율과 출생이수 변동 추이	10
[그림	-2] 15~49세 여성의 혼인 건수(초혼기준) 분포······	15
[그림	-3] 초혼연령 변동 추이 ·····	16
[그림	-4] 15~49세 여성의 유배우 출산율 변동 추이······	18
[그림	-5] 1995~2018년 간 템포효과 ·····	26
[그림	-6] 1995~2000년 간 템포효과	28
[그림	-7] 2000~2010년 간 템포효과	29
[그림	-8] 2010~2018년 간 템포효과	29
[그림	II-9] 다중상태 평형이론에서 가정하는 성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의 관계 ·····	45
[그림	II-10] 생애주기를 염두에 둔 출산관련 연구자료의 구축·····	48
[그림	Ⅲ-1] 조혼인율 변동 추이	54
[그림	Ⅲ-2]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13세 이상 인구)	55
[그림	Ⅲ-3]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13세 이상 인구)	56
[그림	Ⅲ-4] 결혼은 당사자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된다 반대 비율-성별	57
[그림	Ⅲ-5] 상대적 고출산국가와 초저출산 경험국가 비교	59
[그림	Ⅲ-6] 프랑스의 혼인율 및 PACS율 추이	61
[그림	Ⅲ-7] 프랑스 합계출산율 변화(1998~2012)	62
[그림	Ⅲ-8] 프랑스 비혼출산율 변화(1998~2012)	62
[그림	Ⅲ-9]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와 출산율	64
[그림	IV-1] 미래 사회 정책 목표 - 가족 다양성 포용 사회	67
[그림	IV-2]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방향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진단	71
[그림	Ⅳ-3]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과제	72



# 저출산 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 다양성 포용

김 영 란

# 1. 서론

#### 제 1 절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 한국은 세계에서 초저출산국가에 해당됨.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1명 이하임.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반등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출산율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 최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고 출산율 제고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바 있으며, 포용적 복지국가를 천명함.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전반적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아이를 낳아서 길러도 괜찮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됨
- □ 만혼과 비혼이 저출산 현상의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임. 따라서 그동안 저출산 대응 정책은 결혼 진입 및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초점을 두고 지원제도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음. 예를 들어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 정책, 주거 지원 정책 등임. 그러나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출산력 저하의 인과구조와 결정요인을 찾으려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는데, 저출산 현상은 하나의 단일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천현숙 외, 2016)이며 이러한 원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기에(곽윤철, 2017) 원인을 단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특히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나는 현상임.

또한 저출산은 개개인의 사적인 결혼과 출산 관련 행위의 집합적 결과물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일례로 동일한 객관적 조건을 가진 개인이 결혼과 출산에 대하여 서로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최근 저출산 요인에 있어서 개인의 가치관 변인이주목되고 있음

-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제적 여건이 동질적인 집단 내에서도 결혼과 출산 등 가족 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개인의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음
- 이러한 개인의 가치관 변인은 한국 사회의 가족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음. 한국 사회의 가족규범이나 가족문화 등 문화적 요인이 결혼이나 자녀 출산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경제적 요인 관련 정책이 외에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접근도 필요함을 의미함.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적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결혼을 선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데 이는 한국의 가족규범이나 가족문화에 대한 세대 간 차이, 젠더간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임. 또한 한국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과한 가족과 형태상 양부모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간주하는 정상가족이데올로기가 강한 국가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이미지가 여전히 강하게 존속하고 있음. 이에 최근 결혼 과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가족형성 기피 현상이 증가하고 있음
- □ 이처럼 한국의 저출산은 비혼 증가, 만혼의 보편화, 출산 기피, 비혼 동거의 증가 등 가족 변동에 의한 결과이며, 가족 변동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한국 가족의 다양성 증가'로 규정할 수 있음. 이러한 가족 변동의 배경에는 경제적 문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지만 한국 가족의 가부장적 문화와 확대가족에 기반한 가족규범에 대한 거부감의 문제가 있음
  - 복지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여전히 부양과 돌봄의 기본 단위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등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안정이 커지면서 부모세대보다 더 잘살기 어려운 청년세 대는 이제 가족 형성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임. 한국 사회는 교육, 주거, 고용, 보호, 부양 등에 가족의 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개개인에 대한 사회보장기능을 가족이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무부양자 기준 완화 등 가족 책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의 집단에게는 의지할 것은 가족뿐임. 경제적으로 완전하게 독립하지 못한 청년세대는 위험회피 차원에서 혼인과 출산을 꺼리게 됨. 혼인을 하더라도 주거나 육아를 부모에 의존하는 확장된 핵가족이 늘어나고, 부모가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청년 세대는 선불리 결혼을 선택하기 어렵고 저출산 현상을 초래함

- 한국에서 결혼은 한국에서 결혼은 당사자 간 결합이라기 보다 가족 간의 결합으로 의미가 강하여 결혼 이후 확대 가족 관계 기반의 가족 규범이나 의례(제사 등) 준수 등을 요구하는 경향이 여전함. 또한 여성의 입장에서는 성불평등한 가부장적 가족 문화가 잔존하고 있어 일·가정 양립 등 부담이 있음. 따라서 확대가족 기반의 가족 규범과 가부장적 가족문화 등이 가족 형성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 □ 따라서 정부는 저출산 사회로의 전환 대응을 위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부양과 돌봄의 단위로서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과 더불어 가족생활의 다양한 양상을 포용하고자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2. 연구 목적

- □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이 저출산 사회로 전환되었음을 인정하고, 저출산의 요인으로 최근 한국 가족의 변동으로서 가족 다양성 증가에 주목하였음.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안정적인 인구 규모 유지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을 정책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함. 또한 정책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데이터에 기반하여 제시하고 장애 요인과 실현 방안도 마련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출산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지금까지는 주로 경제적 상황에 초점을 두어왔다면 가족관계, 사회규범, 정책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 기반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 가족 변동, 즉 가족 다양성 증가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짐

#### □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함

○ (Wh-Question) 개인의 다양성, 개인의 가족에 대한 선택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로 전환된다면 인구 감소를 완화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가족에 대한 선택의 다양성을 포용하기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 제 2 절

#### 연구 추진 개요

#### 1. 연구 내용

- □ 한국 사회 저출산 요인 분석
-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
  - 합계 출산율 변동 요인 분해
  - 만혼화로 인한 출산연기효과(템포효과) 분석
- 지역별 성평등 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검토

#### □ 한국 가족의 다양성 증가와 저출산

- 가족 다양성 증가 현황
- 가족 다양성과 저출산의 관계

#### □ 저출산 사회 대응을 위한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제안

- 가족 다양성 포용 관련 해외 사례 검토
  - 가족 다양성 포용 관련 해외 정책과 출산율
-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방향과 과제
  -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의 개념과 정책 내용
  -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의 필요성 진단
  -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과제 제안 및 타당성 진단
- 추진방안
  - 정책 추진 여건 진단 및 실현 방안 제안

### 2. 연구 방법

#### □ 문헌 연구

- 한국 가족의 다양성 증가 현황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리
-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리

#### □ 데이터 분석

- 출산율 변동 요인 분석
  - 활용 자료 : 통계청의「인구동향조사」、「인구주택총조사」、「주민등록인구」자료
- 지역별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의 상관관계
  - 활용 자료 : 16개 시도 지역성평등지수, 16개 시도 합계출산율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do)」의 'e-지방지표(통계표)' 등

#### □ 가족 다양성 포용 관련 해외 정책 사례 조사

○ 해외 사례 국가 : 독일, 프랑스 등

####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목적)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의 필요성 및 정책과제 타당성 검증
- (대상 및 규모) 가족 정책 및 저출산 관련 전문가 20여명 내외
- (조사 방법) 전문가 조사표를 전문가 그룹에 배부하고 수거하여 자료 처리함. 조사전문기관 에 위탁 의뢰하여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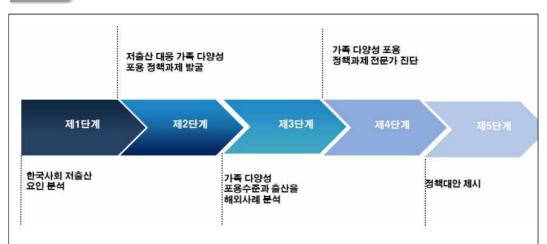
#### □ 전문가 자문회의

- 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에 대한 의견 자문
- 정책 대안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 자문

#### 3. 연구 흐름도

□ 이상의 연구 내용과 방법에 의한 연구추진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 [그림 I -1] 연구 process



- (1단계: 데이터 분석) 한국 사회 저출산 결정 요인 분석
  - 출산을 변동 요인 분해
  - 지역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
- ② (2단계: 문헌 조사) 저출산 대응을 위한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필요성과 과제 발굴
  · 가족 다양성 포용정책의 개념과 정책과제
- (3단계: 사례 조사) 가족 다양성 포용 수준과 출산율에 대한 해외사례 분석
- 가족 다양성 포용 관련 해외정책 검토 및 출산율 변화
- 해외 국가 사례 : 독일, 프랑스 등
- (4단계: 전문가 델파이 조사)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에 대한 전문가 검증
  - 저출산 대응을 위한 가족다양성 포용 정책의 필요성 진단
  - 가족다양성 포용 정책 과제 타당성 진단
- (5단계: 대안 제시)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과제 제안
  - 저출산 사회 대응을 위한 가족다양성 포용 정책 과제 제안
  - 정책 추진 장애요인 극복요건 등 실현방안 제안

# II. 한국 사회 저출산 요인 분석

#### 제 1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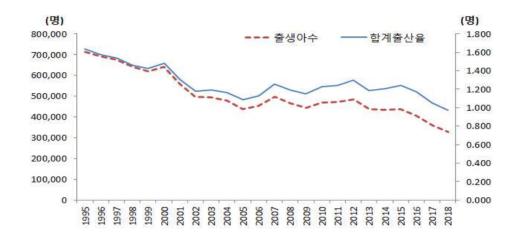
#### 한국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

#### 1.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 가. 합계출산율 변동
- □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수로 정의되며,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나타남
  - 합계 출산율은 '49시책'을 통해 출산억제정책을 강화하면서 1984년 1.74명<sup>1)</sup>으로 인구대체 수준미만으로 떨어진 후 전반적으로 하락세
    - 정부는 1996년 인구증가억제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함, 이후 초저출산시대에 진입
    - 합계출산율은 1995년 1.63명에서 2005년 1.09명으로 감소, 이후 소폭 증가 후 10년간 1.13명~1.26명 사이를 유지
    - 2015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면서 2018년 1명 미만으로 감소하여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임
- □ 출생아 수의 감소 속도도 합계출산율 감소 속도와 유사하게 나타남
  - 1995년 715,020명인 출생아 수는 2018년 절반 이하인 326,822명으로 감소

<sup>1)</sup>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장래 합계출산율 / 전국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101&conn\_path=I2, (2019.10.7. 인출)

#### [그림 ||-1]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변동 추이



### 〈표 Ⅱ-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단위: 명)

МЕ	크게로니요	- IUOLA	전년대비			
연도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1995	1.63	715,020	-	-		
1996	1.57	691,226	-0.06	-23,794		
1997	1.54	675,394	-0.04	-15,832		
1998	1.46	641,594	-0.07	-33,800		
1999	1.43	620,668	-0.04	-20,926		
2000	1.48	640,089	0.05	19,421		
2001	1.31	559,934	-0.17	-80,155		
2002	1.18	496,911	-0.13	-63,023		
2003	1.19	495,036	0.01	-1,875		
2004	1.16	476,958	-0.03	-18,078		
2005	1.09	438,707	-0.08	-38,251		
2006	1.13	451,759	0.05	13,052		
2007	1.26	496,822	0.13	45,063		
2008	1.19	465,892	-0.07	-30,930		
2009	1.15	444,849	-0.04	-21,043		
2010	1.23	470,171	0.08	25,322		
2011	1.24	471,265	0.02	1,094		
2012	1.30	484,550	0.05	13,285		
2013	1.19	436,455	-0.11	-48,095		
2014	1.21	435,435	0.02	-1,020		
2015	1.24	438,420	0.03	2,985		
2016	1.17	406,243	-0.07	-32,177		
2017	1.05	357,771	-0.12	-48,472		
2018	0.98	326,822	-0.08	-30,949		
1995~2018	-0.66	-388,198	_	-		

#### 나. 연령별 출산율 변동

- □ 합계출산율은 20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이며, 최근에는 30대에서도 감소함 ((표 III-2) 참조)
  - 연령별 출산율2)은 1995년 이래 5년 주기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5~29세의 연령층은 1995년 이래 출산율 감소 추이가 지속되고 있고 30대 출산율의 경우 2015년까지 증가 추이를 보이나 2018년에는 감소함.
    - 40~44세 출산율은 1995년 2.3명이래 점차 증가하여 2018년 6.5명을 보이며, 44~49세 출산율은 0.2명 수준을 유지
  - 합계출산율은 2000년 1.6명에서 2005년 1.1명으로 0.5명 감소하였음
    - 두 기간의 감소는 20대의 출산율, 특히 25~29세 출산율의 감소가 주된 원인임
    - 2015년 1.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18년 1.0명으로 감소하는데, 그 원인은 40세 미만 출산율의 감소에 기인
- □ 1995년을 기준(100.0)으로 변화폭과 시기별 증감률을 산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 2018년 출산율은 1995년 대비 20~24세가 12.4%로 가장 크게 낮아졌고 25~29세 21.4%, 15~19세 25.6%, 44~49세 76.7% 수준으로 나타남, 만혼화가 가속됨에 따라 2018년 30~34세, 35~39세 40~44세 출산율은 1995년 대비 증가, 각각 129.8%, 305.4%, 283.1%로 약 1.3배~3배가량 증가
  - 2010년과 2015년 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합계출산율이 동일한데, 이는 15~29세의 출산율이 감소하지만 30~44세의 출산율이 높아졌기 때문
  - 2015년에서 2018년 합계출산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특히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였던 30~34세 출산율이 크게 감소한 것에 영향을 받음

<sup>2)</sup> 해당 연령 여성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

#### 〈표 Ⅱ-2〉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 변동

(단위: 명, %)

분야	연도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4~49	합계 출산율
	1995	3.8	66.3	188.0	71.4	14.9	2.3	0.2	1.7
	2000	2.7	41.2	161.6	91.0	18.2	2.7	0.2	1.6
출산율	2005	2.2	19.0	96.8	87.7	20.1	2.6	0.2	1.1
(명)	2010	1.8	17.2	84.8	117.3	34.7	4.3	0.2	1.3
	2015	1.5	13.0	65.5	123.2	49.7	5.9	0.2	1.3
	2018	1.0	8.2	40.3	92.7	45.5	6.5	0.2	1.0
	199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513 4 5	2000	72.8	62.1	85.9	127.5	122.4	120.5	104.0	91.6
1995년 수준 대비 비율	2005	57.9	28.6	51.5	122.7	135.0	115.7	93.6	65.9
(1995=100) (%)	2010	47.9	25.9	45.1	164.3	233.3	188.1	85.1	75.0
(70)	2015	38.9	19.6	34.8	172.5	333.6	256.9	70.3	74.6
	2018	25.6	12.4	21.4	129.8	305.4	283.1	76.7	56.0
	'95~'00	-27.2	-37.9	-14.1	27.5	22.4	20.5	4.0	-8.4
	'00~'05	-20.5	-53.9	-40.1	-3.7	10.2	-4.0	-9.9	-28.1
증감률 (%)	'05~'10	-17.3	-9.6	-12.4	33.9	72.8	62.5	-9.1	13.9
(,,,	'10~'15	-18.8	-24.1	-22.7	5.0	43.0	36.6	-17.4	-0.6
	'15~'18	-34.2	-36.9	-38.4	-24.8	-8.4	10.2	9.2	-24.9

### □ 기간별로 상대적 증감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합계출산율에서 가장 높은 감소를 보인 2000~2005년의 경우 20대의 출산율의 하락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합계출산율이 높아진 2005~2010년의 경우 35~39세와 40~44세의 상대적 출산율 상승이 높았음

# 〈표 Ⅱ-3〉 연령별 출산율의 변동이 합계출산율에 변동 영향에 미친 기여도

(단위: 명, %)

분야	연도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4~49	합계 출산율
	'95~'00	-0.006	-0.108	-0.127	0.064	0.017	0.002	0.000	-0.158
	'00~'05	-0.002	-0.111	-0.283	0.002	0.003	0.000	0.000	-0.392
변화량 (명)	'05~'10	-0.002	-0.004	-0.080	0.146	0.073	0.007	0.000	0.141
(6)	'10~'15	-0.002	-0.019	-0.070	0.025	0.073	0.009	0.000	0.015
	'15~'18	-0.002	-0.022	-0.105	-0.128	-0.009	0.004	0.000	-0.261
	'95~'00	4.0	68.4	80.4	-40.5	-10.9	-1.3	0.0	100.0
	'00~'05	0.4	28.5	72.3	-0.4	-0.8	0.0	0.0	100.0
기여도 (%)	'05~'10	-1.2	-2.6	-56.5	103.5	52.0	4.8	0.0	100.0
	'10~'15	-14.7	-133.3	-478.6	168.0	497.9	62.0	-1.3	100.0
	'15~'18	0.9	8.4	40.0	48.9	3.3	-1.6	-0.1	100.0

## 2. 합계출산율 변동 요인 분해

- □ 출산율은 여러 요인에 의해 동시에 영향을 받음.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음
  - 봉가르츠(Bogaarts, 1978), 홉크래프트와 리틀(Hobcraft and Little, 1984)은 출산율의 변화 요인을 결혼, 임신, 임시적/영구적 불임, 수유, 피임, 인공유산 관련 행위 등으로 보고 일련의 출산 중지 상황에서의 생존함수의 곱을 통해 출산율을 분해
  - 우리나라에서는 전광희(1997)가 이들의 모형에 기초하여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를 통하여 한국의 출산율 결정요인을 분해
  - 이철희(2018)는 출산을 여성의 혼인력과 유배우 여성의 출산력의 결합으로 가정한 후 이를 요인분해하여 출산장려금, 아동인구 대비 보육시설의 수 등 출산장려정책이 유배우 출산율 에 미치는 영향을 시군구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 □ 본 연구는 이철희의 연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령별 출산율은 혼인력과 출산력 요인으로 분해하 여, 이를 통해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접근

$$\begin{split} asfr_i &= \frac{b_i}{asfp_i} = \frac{b_i}{asfp_i} \times \frac{asmfp_i}{asmfp_i} \\ &= \frac{b_i}{asmfp_i} \times \frac{asmfp_i}{asfp_i} = asmfr_i \times asmr_i \end{split}$$

- 이 여기에서  $asfr_i$ 은 i 연령층의 출산율,  $b_i$ 는 모의 i 연령층의 출생아수,  $asfp_i$ 는 i연령층의 여성수,  $asmfp_i$ 는 i 연령층의 유배우 여성수,  $asmfr_i$ 은 i 연령층의 유배우출산율,  $asmr_i$ 은 i 연령층의 유배우율임3)
- □ 본 연구는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된 1996년 전후부터 최근까지의 출산율 변동을 통해 저출산현 상의 지속 원인이 되는 출산요인들을 분해하여 출산 감소의 원인을 파악
  - 출산율 변화요인 분석은 이삼식·이지혜(2014)의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기초로 최근까지의 합계출산율 변화와 구성 요인의 기여도를 분석
  -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주민등록인구」 자료이며, 이들 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특징을 추정

#### 가. 유배우율

- □ 혼내 출산이 대다수인 우리나라에서는 유배우율을 출산율 분석의 주요 요인으로 상정할 수 있음
  - 기혼율은 전체 여성 인구 중에서 혼인 경험이 있는 여성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에 비해, 유배우율은 기혼여성 중 이혼 및 사별 상태의 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유배우 여성 인구의 비율을 구한다는 차이점이 있음
  - 한국에서 일어나는 출산은 혼내 출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출산율 분석에 있어 결혼을 출산의 전제조건인 것으로 가정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음
  - 출산요인 분해에서 유배우율은 한국 사회의 출산율 분석에서 주요 요인으로 등장4
  - 이처럼 결혼이 출산의 전 단계로 가정되는 경우. 혼인의 감소는 출산의 감소를 초래하게

<sup>3)</sup> 이삼식·이지혜(2014),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p.61 인용

<sup>4)</sup> 참고: 출산률 분석에 유배우율을 주요 요인으로 활용한 논문 및 보고서 안종범, 우석진, 정지운, 김미진, 김하나 (2010). 저출산의 원인분석을 통한 저출산대책 개선과 여성인적자원 활용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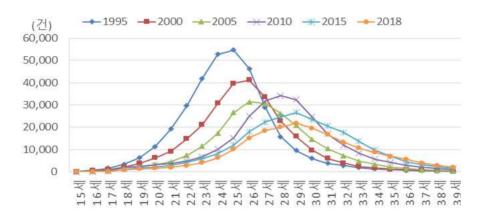
이철희 (2012),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한국인구학, 35(3), 117-144

이철희 (2018).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2000년~2016년 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경제학연구, 66(3). 5-42

됨. 이에 가임기 여성의 혼인율은 출산율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변수가 되므로 혼인 건수, 평균 초혼연령과 더불어 유배우율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 혼인 건수는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 상태이며, 혼인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연령이 상승하는 추세 를 보임.
  - 인구동향자료의 분석을 통해 각 년도별 15~39세의 여성들의 혼인 건수를 초혼 기준으로 살펴복
    - 1995년에는 25세에 가장 많은 혼인이 이루어졌으며, 2000년에는 26세에 가장 많은 혼인이 이루어짐, 2005년에도 26세에서 혼인 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전체적으로 혼인 건수는 줄어드는 양상, 2010년에는 28세, 2015년에는 29세, 2018년 29세에서 가장 많은 혼인이 발생하는 것을 통하여 만혼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음
    - 20대에서의 혼인 건수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30대에서의 혼인 건수의 비중은 증가하는 현상에서도 만혼화 현상이 나타남<sup>5)</sup>

## [그림 ॥-2] 15~49세 여성의 혼인 건수(초혼기준) 분포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분석, 초혼부부의 연령별 혼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36&conn\_path=I3

5) 15세에서 39세의 여성의 혼인 건수는 다음과 같이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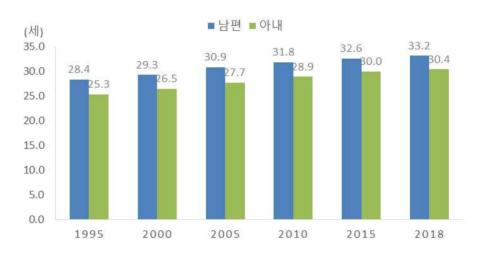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15~39세 혼인 건수(건)	340,916	270,683	230,513	252,019	234,171	194,967

출처: 통계청(2019.11), 인구동향분석, 초혼부부의 연령별 혼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36&conn\_path=I3

- □ 평균 초혼연령을 살펴보면 만혼화 현상을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1995년 여성의 평균초혼연령 은 25.3세인 반면, 2018년에는 30.4세로 약 5.1세 늦어졌음을 확인
  - 동기간에 남성은 28.4세에서 33.2세로 4.8세 늦어진 것에 비해 여성의 초혼 연령이 더 증가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여성이 늦게 결혼함에 따라 초산의 연령도 늦어지게 되며<sup>6</sup>,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출산의 기회는 감소
  - 유배우율의 감소와 더불어 만혼화 현상은 합계출산율에 음의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음

# [그림 ||-3] 초혼연령 변동 추이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분석, 초혼부부의 연령별 혼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ld=101&tblId=DT\_1B83A36&conn\_path=l3

6) 1995년의 초산연령은 26.5세였으나, 2018년에는 31.9세로 약 5.4세가 늦어졌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78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구분	첫째아	첫째아	첫째아	첫째아	첫째	첫째아
초산연령	26.5	27.7	29.1	30.1	31.2	31.9

통계청(2019.11), 인구동향조사, 시도/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연령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0&conn\_path=13

- □ 유배우율을 확인해보면, 1995년 0.621에서 2018년 0.511<sup>7)</sup>로 0.094만큼 감소. 이는 1995년 수준의 82.3%임
  -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인 나이대는 20~24세로 1995년 수준의 17.4%로 나타남
  - 가장 적은 감소율을 보인 나이대는 44~49세로 1995년 수준의 91.4%인 것으로 나타남
- 2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 큰 감소율을 보였고, 30대, 40대 순으로 적은 감소율을 보임

## 〈표 Ⅱ-4〉 15~49세 여성의 유배우율 변동 추이

분야	연도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4~49	전체
	1995	0.008	0.167	0.699	0.914	0.922	0.901	0.864	0.621
	2000	0.007	0.107	0.591	0.869	0.907	0.889	0.861	0.612
ОШО9	2005	0.004	0.062	0.401	0.782	0.868	0.873	0.849	0.583
유배우율	2010	0.003	0.039	0.300	0.685	0.816	0.840	0.833	0.543
	2015	0.002	0.029	0.220	0.605	0.761	0.792	0.794	0.500
	2018	0.002	0.029	0.204	0.588	0.760	0.811	0.790	0.511
	199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95년 수준	2000	93.1	64.4	84.6	95.1	98.4	98.7	99.7	98.5
대비 비율	2005	51.3	37.1	57.4	85.6	94.2	96.9	98.3	93.9
(1995=100)	2010	42.7	23.3	43.0	75.0	88.5	93.3	96.4	87.5
(%)	2015	19.5	17.3	31.5	66.1	82.5	88.0	92.0	80.4
	2018	21.0	17.4	29.1	64.4	82.4	90.0	91.4	82.3
	'95~'00	-6.9	-35.6	-15.4	-4.9	-1.6	-1.3	-0.3	-1.5
<b>エフ</b> レラ	'00~'05	-44.9	-42.4	-32.2	-10.0	-4.3	-1.7	-1.4	-4.7
증감률 (%)	'05~'10	-16.8	-37.1	-25.1	-12.4	-6.1	-3.8	-1.9	-6.9
(70)	'10~'15	-54.3	-25.6	-26.7	-11.7	-6.7	-5.7	-4.6	-8.1
	'15~'18	7.7	0.7	-7.5	-2.7	-0.2	2.3	-0.6	2.3

- 5년간의 증감률을 살펴본 결과, 20대 이하 층에서는 매 5년간 큰 폭으로 유배우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 이상에서는 비교적 소폭의 유배우율 감소 현상이 일어남
  - 1995년부터 2015년까지는 지속적인 낙폭을 보였으며, 최근 3년 동안에는 전체적으로 2.3% 의 상승을 보였으나, 이는 비교적 낮은 비중인 10대의 유배우율 증가에 기인하는데, 이는 혼인 건수의 상승이 아닌, 15~19세 인구의 감소가 더 큰 영향을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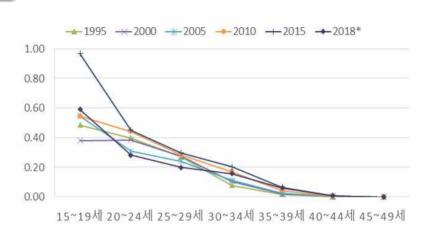
<sup>7) 2018</sup>년의 수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2015년에서 2018년 간의 혼인상태비율의 증감율이 인구센서스에도 동일한 증감율로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여, 2015년의 인구총조사 혼인상태의 비율을 보정하고, 2018년 혼인상태별 규모를 추산하였다.

 $<sup>(2018</sup>년규모) = (2015년인구총조사규모) \times (2015년인구총조사비율) \times (\frac{18년경제활동인구조사비율}{15년경제활동인구조사비율})$ 

#### 나. 유배우 출산율

- □ 유배우 출산율은 유배우 여성 중 조사당해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중을 구한 것으로, 앞서 가정한 혼인상태를 전제로 한 출산을 보여주는 수치임
  - 혼외출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유배유출산율이 설명력이 적으나 혼내출산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는 큰 설명력을 가짐
  - 각 연령대로 살펴보면, 저연령일수록 출산을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림 ||-4] 15~49세 여성의 유배우 출산율 변동 추이



- 각 년도에 따른 뚜렷한 경향이 잘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 가능함. 이는 혼인과 출산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음을 가접적으로 보여줌
  - 출산의 경우 혼인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8이나, 결혼을 하였다고 대다수가 출산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 이는 해당 시기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고려됨. 즉,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가족 가치관의 변화가 반영된 가족 구성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음

(단위: 명. %)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총계 (명)	715,020	640,089	438,707	470,171	438,420	326,822
혼인외의 자 (명)	8,760	7,614	7,848	9,636	8,152	7,166
혼외출산비율 (%)	1.2	1.2	1.8	2.0	1.9	2.2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도/법적혼인상태별 출생

<sup>8) 2018</sup>년 법적혼외 출생의 비율은 약 2.2%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반적으로 출생아수가 감소하여 혼외출생 의 수도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유배우 출산율은 1995년 0.090에서 2018년 0.052로 0.038만큼 감소하였으며, 이를 1995년을 100으로 환산하면, 2018년에는 42.1만큼이 감소하여 57.9수준으로 줄어든 것과 같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 30.0% 가까이 감소해, 전체적인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음
    - 반면 35~39세에서 3.7배, 40~44세에서 3.1배, 30~34세에서 2배의 증가를 보여, 만혼화와 초산연령의 증가를 확인해 볼 수 있음
  - 5년 동안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2005년에서 2015년에는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나. 나머지 기간에서는 감소함
    - 2000년부터 2005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했고 2005년에서 2010년에는 기저효과로 비교적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감소분을 상쇄할 만큼의 증가율은 아님
  - 지난 3년간은 15세부터 39세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감소 현상이 나타났음을 확인

## 〈표 Ⅱ -5〉 15~49세 여성의 유배우 출산율 변동 추이

분야	연도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4~49	전체
	1995	0.485	0.398	0.269	0.078	0.016	0.003	0.000	0.090
	2000	0.379	0.384	0.273	0.105	0.020	0.003	0.000	0.079
유배우	2005	0.548	0.307	0.241	0.112	0.023	0.003	0.000	0.057
출산율	2010	0.544	0.442	0.282	0.171	0.043	0.005	0.000	0.068
	2015	0.967	0.451	0.298	0.204	0.065	0.007	0.000	0.071
	2018	0.591	0.283	0.198	0.158	0.060	0.008	0.000	0.052
	199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대 소조	2000	78.2	96.4	101.5	134.1	124.5	122.1	104.3	88.2
1995년 수준 대비 비율	2005	112.9	77.2	89.7	143.4	143.4	119.4	95.3	63.8
(1995=100) (%)	2010	112.2	111.0	104.9	219.2	263.7	201.6	88.3	75.6
(70)	2015	199.4	113.3	110.6	260.8	404.4	292.0	76.4	79.3
	2018	121.8	71.0	73.6	201.6	370.8	314.5	83.9	57.9
	'95~'00	-21.8	-3.6	1.5	34.1	24.5	22.1	4.3	-11.8
	'00~'05	44.3	-20.0	-11.7	6.9	15.2	-2.3	-8.6	-27.7
증감률 (%)	'05~'10	-0.6	43.9	17.0	52.9	84.0	68.9	-7.4	18.5
(,,,	'10~'15	77.7	2.0	5.4	19.0	53.3	44.9	-13.4	4.9
	'15~'18	-38.9	-37.3	-33.4	-22.7	-8.3	7.7	9.8	-26.9

#### 다. 출산율 요인분해 효과

- □ 출산율 요인분해<sup>9)</sup>를 통하여서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순효과를 살펴보면, 출산율이 혼인 율의 저하로 야기되는 현상인지, 혼인 후 출산하는 부부의 비중이 줄어들어서 생긴 현상인지 알아볼 수 있음
  - 출산율을 가임기 여성 중 출산한 여성의 비율로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이 식을 재구성할 수 있음, 앞에서 살펴보았듯, 우리나라는 혼내 출산이 98%가량을 차지하므로, 혼인을 주요 한 변수로 고려 가능함

(출산율) = 
$$\frac{(출산한여성)}{(가임기여성)} = \frac{(출산한여성)}{(가임기여성)} \times \frac{(결혼한여성)}{(결혼한여성)}$$

$$= \frac{(결혼한여성)}{(가임기여성)} \times \frac{(출산한여성)}{(결혼한여성)}$$

$$= (가임기여성의유배우율) \times (가임기여성의유배우출산율)$$

- 상기의 식에서 각 항에 대입할 수치를 연도별, 5세 연령별로 구분하여 구하고, 각 요인의 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하나의 요인을 통제하고 다른 요인이 변화할 때의 효과를 측정하 는 방법을 사용. 2개 시점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식을 세워보면 다음과 같음

```
\begin{split} ( { \buildrel \pm 1 } ) - ( { \buildrel \pm 2 } ) &  \  : { \buildrel \pm 2 } ) - ( { \buildrel \pm 2 } ) \times ( { \buildrel \pm 2 } ) + ( { \buildrel \pm 2 } ) \times ( { \buildrel \pm 2 } )
```

- 출산율의 차이는 유배우율의 요인과 유배우 출생율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요인의 수치를 특정 시점의 값으로 고정하고, 해당 요인의 변화를 파악하여 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낼 수 있음
  - 실제의 수치를 활용하여 구하게 되면 순변화와 두 요인간의 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두 요인이 정확하게 분리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두

<sup>9)</sup> 박경숙(2017). 『인구학 방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104~108의 단일요인분석 방법론 참조

요인의 교호작용에 의한 값으로 해석하거나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생했으나 요인분해에서 는 누락된 오차항으로 해석함

- 두 요인의 크기를 분리해내면, 절대값은 영향의 크기, 부호는 영향의 방향으로 해석하고, 영향의 크기(기여도)만을 비교하기 위하여 요인의 절대값을 취해 각 요인별 구성비를 구함. 이를 수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음

(출산율의 순변화) = (유배우율요인) + (유배우출산율요인)

(출산율의총변화)=|유배우율요인|+|유배우출산율요인|

 $(유배우율요인의 출산율변화량기여도) = \frac{(유배우율요인)}{|유배우율요인|+|유배우출산율요인|}$ 

(유배우출산율요인의출산율변화량기여도) = (유배우출산율요인) |유배우율요인|+|유배우출산율요인|

- □ 출산율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가임기 여성의 규모, 유배우 여성의 규모, 출산한 여성의 규모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자료를 활용함.
  - 가임기 여성의 규모는 각 년도의 「주민등록인구현황」에서 구함
  - 출산한 여성 규모는 각 년도의 「인구동향조사」에서 출생아수로 간주함
  - 유배우 여성의 규모는 인구센서스를 통하여 5년 단위로 구할 수 있으나, 2018년에는 구할 수 없어 추산함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나타난 혼인상태비율의 증감의 비율만큼 인구센서스 자료에 대해 서도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을 통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나타나는 혼인상태비율을 구하여 2015년 대비 2018년의 증가비를 인구센서스 자료에 적용10
- □ 5년 간의 출산율을 유배우율과 유배우 출산율로 분해하여 각 요인의 기여도를 구한 결과, 2005년 에서 2010년에는 유배우 출산율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출산율이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출산율이 감소

<sup>10) 2018</sup>년의 유배우율 추산을 위해서 기존의 증가추세와 동일하게 변화할 것이라는 가정으로 행하는 외 삽법을 활용한 결과와 인구센서스와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동일한 구성비를 가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경 제활동인구조사의 분석결과를 비교한 결과, 외삽법은 비율이 작은 집단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고,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에는 유배우율이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 상기와 같은 방법을 적용 함. 그 결과 외삽법의 결과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의 중간 정도의 값이 산출됨

# 〈표 II-6〉 합계출산율 변화에 대한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의 기여도

(단위: %)

	구분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소계
'95	유배우율 요인	-24.0	-90.9	-90.9	-12.6	-6.3	-5.7	-7.1	-66.7
~'00	유배우출산율 요인	-76.0	-9.1	9.1	87.4	93.7	94.3	92.9	33.3
'00	유배우율 요인	-50.3	-68.0	-73.4	-58.9	-22.0	-43.5	-14.1	-82.7
~'05	유배우출산율 요인	49.7	-32.0	-26.6	41.1	78.0	-56.5	-85.9	-17.3
'05	유배우율 요인	-96.5	-45.8	-59.7	-19.0	-6.7	-5.2	-20.1	-32.9
~'10	유배우출산율 요인	-3.5	54.2	40.3	81.0	93.3	94.8	-79.9	67.1
'10	유배우율 요인	-41.1	-92.7	-83.1	-38.3	-11.2	-11.3	-25.7	-47.5
~'15	유배우출산율 요인	58.9	7.3	16.9	61.7	88.8	88.7	-74.3	52.5
'15	유배우율 요인	16.5	1.8	-18.3	-10.5	-1.8	23.3	-5.4	-11.9
~'18	유배우출산율 요인	-83.5	-98.2	-81.7	-89.5	-98.2	76.7	94.6	-88.1

주: 박경숙(2017). 인구학방법. pp.104~108의 단일요인분석 방법론을 적용함.

- 유배우율 요인은 꾸준히 출산율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에 비해, 유배우출산율 요인은 증가요 인으로 작용한 시기도 있고, 감소요인으로 작용한 시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배우율요인은 1995년부터 2000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출산율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및 2003년 카드대란이라는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음
- 2005년에서 2010년까지는 비교적 감소 폭이 낮았으나, 이는 2005년의 기저효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유배우 출산율 요인이 양의 효과를 미친 것은 2007년 황금돼지띠 마케팅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출산이 증가했음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2010년에서 2015년은 20대에서 일어난 유배우율 요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2009년 글로벌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취업난 등의 요인이 20대의 혼인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 2015년에서 2018년까지는 유배우율요인이 비교적 작은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유배우 출산율의 요인의 설명력이 -88.1에 달하여, 결혼하였지만 출산을 하지 않는 부부가 증가한 것이 출산율 저하에 큰 부분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유배우 출산율 요인이 2000년에서 2005년을 제외한 시기에서는 출산율의 급감을 막는 요인 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한편, 최근 3년간의 변화에서는 결혼 후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부부가 증가하였고, 이는 가족 구성에 있어 다양한 가치관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줌

□ 최근으로 올수록 자식이 필수라고 여기는 가치관<sup>11)</sup>을 부정하는 태도가 젊은 연령층 사이로 확산되면서, 결혼과 출산을 연속선 상에 두지 않고 결혼만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유배우 출산율의 큰 감소가 출산율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즉, 저출산은 시대를 지나오면서 가족 가치관이 변화해온 결과임

## 3. 만혼화로 인한 출산연기 효과(템포효과) 분석

- □ 템포효과는 결혼을 늦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출산율 변동 영향을 의미함. 즉, 혼인연령이 높아져 출산이 늦어지면서 기간합계출산율<sup>12)</sup>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효과임
  - 템포효과를 조정한 합계출산율(adjusted TFR)은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을 일정 기간 출산 연령의 평균 변화로 나누어 산정함(Bongaarts and Feeney, 1998)

$$Adjusted \ TFR_i = \frac{TFR_i}{(1-r_i)}$$

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결혼과 자녀가치관 정도에서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함"에 대한 응답비율임, (단위: %)

시점	연령별	전체	긍정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부정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소계	100.0	79.0	31.7	47.3	21.0	18.1	2.9
	19~29세	100.0	69.1	17.2	51.9	30.9	27.1	3.8
2012	30~39세	100.0	74.7	29.0	45.7	25.3	21.4	3.9
	40~49세	100.0	77.5	32.0	45.5	22.5	19.4	3.1
	50세 이상	100.0	86.4	39.0	47.4	13.6	11.6	2.0
	소계	100.0	77.9	29.9	48.0	22.1	19.0	3.1
	19~29세	100.0	61.8	14.0	47.7	38.2	33.6	4.7
2014	30~39세	100.0	74.8	29.9	44.9	25.2	21.0	4.2
	40~49세	100.0	77.9	28.3	49.6	22.1	19.1	3.0
	50세 이상	100.0	85.9	37.2	48.7	14.1	12.2	1.9
	소계	100.0	70.1	22.2	47.9	29.9	25.9	4.0
	19~29세	100.0	43.6	4.6	39.0	56.4	49.0	7.5
2016	30~39세	100.0	61.5	19.2	42.3	38.5	32.9	5.6
	40~49세	100.0	72.8	20.8	52.0	27.2	23.5	3.6
	50세 이상	100.0	82.1	30.7	51.5	15.7	2.2	82.1

12) 기간합계출산율(Period Total Fertility Rate)은 여자들의 한 집단, 곧 코호트가 특정한 시점에서 관찰 한 15-49세의 연령별 출산율을 그대로 경험한다고 가정했을 때 낳게 되는 자녀수의 평균를 의미함.

$$Adjusted \ TFR^{'} = \sum_{i=15}^{49} Adjusted \ TFR_{i}^{'}$$

이 여기에서  $Adjusted\ TFR_i$ 는 i연령층의 조정합계출산율,  $r_i$ 은 모의 i출산연령층의 평균 변화,  $TFR_i$ 는 합계출산율,  $Adjusted\ TFR_i$ 는 조정합계출산율을 의미

#### □ 15~49세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995년 27.92세 이래 매년 높아져 2018년 32.80세로 4.88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출생순 위별로 보아도 증가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관성 있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임.
  - 첫째아 출산연령의 경우 1995년 26.49세이었으나 2018년 31.89세로 초혼연령 증가와 더불 어 첫째아 출산연령은 7.4세로 크게 증가
  - 동기간 동안 둘째아 출산연령은 28.73세에서 33.56세로 4.83세, 셋째아의 출산연령은 31.55세에서 35.09세로 3.54세, 넷째아의 출산연령은 34.18세에서 36.72세로 2.54세 증가
  - 즉, 혼인연령의 증가는 첫째아 출산연령을 가장 크게 늦추었고 넷째아 출산연령을 늦추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아의 경우 1995년 0.79명에서 2018년 0.53명으로 증감을 반복하며 감소추세.
- 둘째아 합계출산율의 경우 1995년 0.70명에서 2018년 0.35명으로 크게 감소함
  - 둘째아 또한 첫째아 출산율과 비슷한 형태의 증감 추이를 보임. 단지 두 기간 감소폭이 첫째아는 0.26명인데 비해 둘째아는 0.35명으로 첫째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셋째아와 넷째아 출산율은 전반적으로 낮아 큰 변화는 보이지 않으나, 1995~2018년 사이 셋째아의 경우 0.06명, 넷째아의 경우 0.01명 합계출산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종합적으로 보면, 출생순위별 합계출산율은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2005년까지 감소하여 최저점에 도달하였고, 이후에 약간 증가되어 불규칙하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11-7) 15~49세 여성의 출산순위별 평균 출산연령과 합계출산율

(단위: 세,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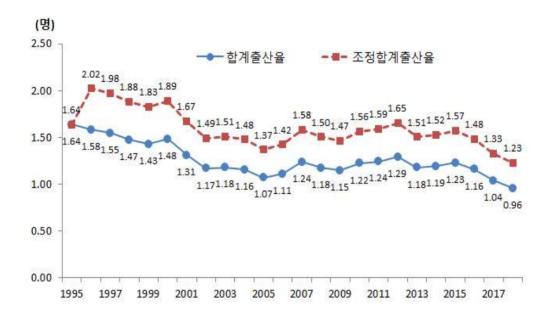
МГ		평	균 출산연령	(세)			ē	마계출산율(l	명)	11 11, 67
연도	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1995	27.92	26.49	28.73	31.55	34.18	1.63	0.79	0.70	0.13	0.02
1996	28.09	26.65	28.89	31.68	34.29	1.57	0.76	0.67	0.13	0.02
1997	28.30	26.89	29.05	31.84	34.39	1.54	0.75	0.64	0.14	0.02
1998	28.50	27.14	29.25	31.98	34.36	1.46	0.73	0.60	0.13	0.02
1999	28.69	27.39	29.42	32.08	34.53	1.43	0.72	0.57	0.13	0.02
2000	29.03	27.69	29.67	32.26	34.56	1.48	0.71	0.62	0.14	0.02
2001	29.27	27.99	29.89	32.50	34.86	1.31	0.63	0.55	0.12	0.01
2002	29.50	28.29	30.20	32.71	34.95	1.18	0.58	0.48	0.10	0.01
2003	29.73	28.58	30.45	32.91	34.97	1.19	0.60	0.48	0.10	0.01
2004	29.99	28.84	30.77	33.10	35.29	1.16	0.60	0.45	0.10	0.01
2005	30.23	29.09	31.04	33.33	35.43	1.09	0.57	0.41	0.09	0.01
2006	30.44	29.28	31.29	33.50	35.46	1.13	0.59	0.42	0.09	0.01
2007	30.59	29.43	31.51	33.62	35.57	1.26	0.67	0.45	0.10	0.01
2008	30.79	29.61	31.69	33.80	35.66	1.19	0.62	0.44	0.10	0.01
2009	30.97	29.85	31.80	33.91	35.73	1.15	0.61	0.44	0.09	0.01
2010	31.26	30.10	32.01	34.04	35.76	1.23	0.63	0.47	0.11	0.01
2011	31.44	30.25	32.23	34.09	35.94	1.24	0.65	0.47	0.11	0.02
2012	31.62	30.50	32.40	34.17	35.88	1.30	0.68	0.48	0.11	0.02
2013	31.84	30.73	32.62	34.36	35.93	1.19	0.62	0.44	0.10	0.01
2014	32.04	30.97	32.81	34.47	35.88	1.21	0.63	0.44	0.10	0.01
2015	32.23	31.20	33.01	34.56	35.95	1.24	0.66	0.46	0.10	0.01
2016	32.40	31.37	33.19	34.70	36.13	1.17	0.62	0.43	0.09	0.01
2017	32.60	31.62	33.36	34.79	36.08	1.05	0.56	0.38	0.08	0.01
2018	32.80	31.89	33.56	35.09	36.72	0.98	0.53	0.35	0.07	0.01

주 : 출생순위별 합계출산율은 주민등록인구와 출생순위별 출생아로 산정함

자료 : 통계청(2019.10.7.), 「인구동향조사」, 시도/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연령

- □ 템포효과는 기간별 모의 평균 출산연령의 평균 변화를 고려할 경우 모든 연도에서 조정된 합계출산 율(이하 조정합계출산율)이 합계출산율에 비해 크게 나타남
  - 1995년~2018년의 템포효과 즉, 1995년 모의 출산연령이 2018년까지 유지된다고 하였을 때 2018년 조정합계출산율은 실측된 합계출산율보다 약 0.27~0.44명 정도 더 높음
    - 즉, 만혼화에 따른 출산 연기효과가 출산수준을 낮추는 효과로 작용하고 있음
    - 동 기간 템포효과는 2005년까지 출산율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고, 이후 2015년까지 0.31~0.36명의 효과를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점차 하락하여 2018년 0.27명으로 만혼화로 인한 출산율 하락효과가 약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5] 1995~2018년 간 템포효과



# 〈표 Ⅱ-8〉 15~49세 여성의 합계출산율과 조정합계출산율 비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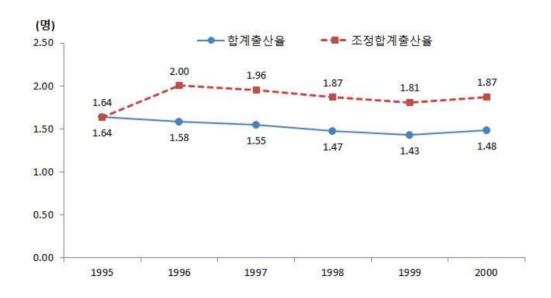
연도	합계출산율(명)	조정합계출산율(명)	차이(명)
1995	1.64	1.64	0.00
1996	1.58	2.02	0.44
1997	1.55	1.98	0.43
1998	1.47	1.88	0.41
1999	1.43	1.83	0.40
2000	1.48	1.89	0.41
2001	1.31	1.67	0.36
2002	1.17	1.49	0.32
2003	1.18	1.51	0.33
2004	1.16	1.48	0.32
2005	1.07	1.37	0.30
2006	1.11	1.42	0.31
2007	1.24	1.58	0.35
2008	1.18	1.50	0.33
2009	1.15	1.47	0.32
2010	1.22	1.56	0.34
2011	1.24	1.59	0.35
2012	1.29	1.65	0.36
2013	1.18	1.51	0.33
2014	1.19	1.52	0.33
2015	1.23	1.57	0.34
2016	1.16	1.48	0.32
2017	1.04	1.33	0.29
2018	0.96	1.23	0.27

주: 조정합계출산율은 관련 산식에 의해 조정하여 계산함.

자료 : 통계청(2019.10.7.), KOSIS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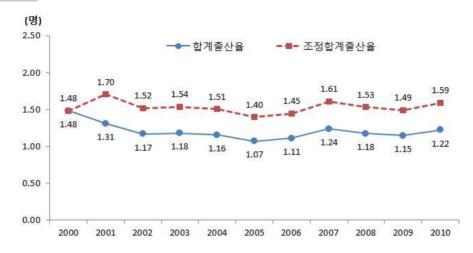
- □ 기간별 템포효과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만혼화에 따른 출산율 감소 효과가 허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만혼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1995~2000년의 경우 동 기간내 모의 평균출산연령 변화는 1.11세로 연평균 0.22세 나타났으나, 템포효과는 0.39~0.42명으로 비교적 크게 나타남
    - 템포효과는 1996년 0.42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감소하여 1999년 0.38명까지 낮아졌으나, 2000년 0.39명으로 약간 상승함

## [그림 II-6] 1995~2000년 간 템포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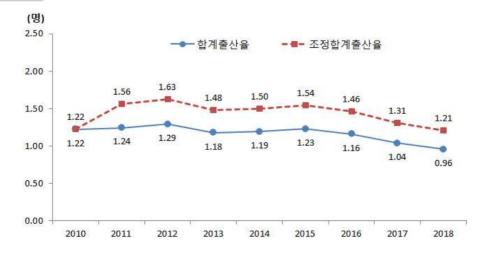
- 2000~2010년의 경우 동 기간내 10년간 모의 출산연령은 2.23세로 연평균으로 계산하여 0.22세 증가. 이와 같은 출산연령의 증가로 인해 합계출산율과 조정합계출산율 간 0.32~0.40명의 차이를 야기함
  - 즉, 2000년 모의 출산연령이 2010년까지 유지되었다면 합계출산율은 평균 0.3~0.4명 정도 더 증가했을 것임
  - 이 기간 동안 템포효과는 2001년 0.40명으로 가장 컸고 2005년 0.32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2005년 이후 소폭 증가하여 0.35~0.38명의 효과를 유지함

# [그림 11-7] 2000~2010년 간 템포효과



- 2010~2018년의 경우 동 기간내 모의 출산연령은 1.54세 변화하였고 연평균 0.19세 증가. 템포효과는 과거에 비해 점차 감소하여 이 기간 동안의 출산율 저하 효과는 0.25~0.33명으로 나타남
  - 2010년 모의 출산연령이 2018년까지 유지되었다면 합계출산율은 2012년 0.33명 더 증가 되었을 것이며. 2018년은 0.25명이 증가했을 것임
  - 이 기간 동안의 템포효과는 2011~2016년까지는 0.3명 이상을 유지했으나, 2017년 0.27명,
     2018명 0.25명으로 최근 들어 만혼화에 따른 출산율 감소 효과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8] 2010~2018년 간 템포효과



#### 제 2 절

## 지역별 성평등 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 1. 저출산의 심화와 지역단위에서의 출산율 연구의 필요성
  - □ 지난 반세기 우리 사회는 경제, 교육, 문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거의 모든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함. 이처럼 광범위하고 급격한 사회변화 중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 중에서도 출산율의 변화 및 출산을 둘러싼 정부정책의 변화일 것임(배호중·한창근, 2016)
    - 저출산 현상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로 인식되기 시작된 이후 매년 발표되는 합계출산율이나 출생아수 통계는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끄는 통계치가 되었는데 새로운 통계 치가 발표될 때마다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음
      - 1980년대 초반 80만 명을 웃돌던 출생아 수는 2001년 합계출산율 1.3 미만의 초저출산 사회로 접어든 이후 연간 출생아수가 50만 명을 밑돌게 되었으며, 2018년 출생아 수는 32.6만 명에 그쳐, 연간출생아 수(1981년 기준 86.7만 명)가 절반 수준을 밑돌게 되는데 채 40년이 걸리지 않음. 합계출산율의 경우 2018년 0.977명으로 한 명이 채 되지 않음(통계 청, 2019)
    -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고, 2000년대 들어서는 세계 최저수준으로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인구정책의 기조 또한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에서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정반대의 방향을 지향하게 됨(국가기록원, 2017)
  - □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을 갖는 복합적인 현상임. 따라서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원인들과 이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계봉오·김영미, 2016: 9)
    -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음. 이와 함께 그간 축적된 이론들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도들도 이전에 비해 활발히 진행되 고 있음(배호중, 2018)
    - 저출산 문제는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개인의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여건, 사회적 지위 등이 복합적으로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며, 사회규범이나 거시 적 경제상황 등도 개인(또는 가구)의 출산 결정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출산을 둘러싼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다차원의 복합적 접근을 시도해야만 할 것임(박승

희·김사현, 2008)

- 거시적 환경의 경우 국가차원에서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지역마다 출산율이 달리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라는 토양 하에서 정책적으로도 지역별로 서로 다른 제도들을 운영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지역단위에서 출산율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시도가 될수 있음
-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출산지원을 위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의 지방정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미미한 수준임(이종하·황진영, 2018)
- 여기서는 다양한 저출산의 원인 중에서 '지역별 성평등 수준'의 차이에 주목함. 다양한 측면을 통해 측정된 각 지역의 성평등 수준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지역별 출산율 차이와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 현상을 이해해보고자 함
  - 소득, 자산, 연령 등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요인들 외에도 개인의 심리적 측면이나 국가나 지역사회의 문화(분위기) 등 주관적인 측면들 또한 개인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출산을 둘러싼 의사결정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으로 판단됨
  -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측면의 요인들 중 성평등과 관련해서 최근들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고자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전면 개정에 발맞추어 지역성평등지수가 개발됨
  -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의 골격이 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2019년 2월 수정계획이 제시되었는데 여기서는 출산율 목표의 출산 장려 정책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개선'과 '성평등 확립'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내세우고, 이를 통한 양육여건 개선을 꾀하고자 함. 아울러 지역 정책에서도 성 평등 관점을 적극적으로 투영하고자 함(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2019)

## 2. 「지역성평등지수」에 대한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가. 「지역성평등지수」 13)

- □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비교·분석하고 정책영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1년 개발됨
  - 「지역성평등지수」는 시·도별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지역별로 성평등 취약한 영역을 보여 주어,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산정되며,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공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됨

## □ 성별격차(gender gap)라는 개념을 통한 「지역성평등지수」의 산정

-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1항은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함
  - 이와 같은 '동등'이란 개념을 수치화 하는 방법으로 '성별격차(gender gap)'라는 개념을 도입함. '격차(gap)'란 빈부, 임금, 기술수준 따위가 서로 차이가 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별격차'는 남성수준과 여성수준의 차이를 의미함. 따라서 지역성평등지수에서 완전 성평등(gender equality)는 성별격차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게 됨
  - 성평등을 성별격차로 측정하는 방법은 국제성평등지수 산정<sup>14)</sup>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개념이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며 집단(국가, 지역)별 발전환경을 통제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특별히 성별격차는 차이(difference)가 아니라 성비(sex ratio)를 많이 이용하는데, 성비를 이용한 방법은 성별 차이뿐 아니라 수준(혹은 발전 정도) 또한 측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 간(혹은 국가 간) 비교에 매우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음
- ○「지역성평등지수」는 다음의 단계를 거쳐 산정되고 있음
  - 첫째, 모든 지표를 평등기준점으로 표준화함. 지표 값의 범주는 완전불평등상태인 '0'에서 완전평등상태인 '1'까지이다. 비율로 보면 여성 비율이 50% 혹은 그 이상일 때, 성비는 '1'로 완전평등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봄
  - 두 번째 단계는 지표를 성비로 전환하는 것임. 성비로 전환하는 이유는 지역별 발전 환경을

<sup>13)</sup> 이 부분은 주재선 외(2018). 『2018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연구』pp.3-22.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지표구성 및 지수 산출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고서 참조

<sup>14)</sup>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GI), Social Watch의 성형평성지수(GEI) 등을 포함해 성별격차를 보여 주는 지수에 대해 주로 활용되는 방법임.

고려하기 위해서인데 지역별로 경제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전 정도가 다름을 고려해, 여성의 절대적 수준보다 남성 대비 여성의 수준으로 측정하는 것임

- 세 번째 단계에서, 각 지표는 지표의 적용 대상 남녀 인구로 가중치(weight)를 부여함. 이를테면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는 기초 및 광역의원 입후보 자격인 25세 이상 인구 성비의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하고,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는 해당 지역 남녀공무원 성비의 역수를 가중치로 활용함
- 네 번째로, 분야별 지수 산정은 각 분야별 지표의 산술평균으로 계산함. 지표의 값은 'O(완전 불평등)'~'1(완전평등)'까지 범위를 가지며, 생산여부에 따라 측정지표와 추정지표를 활용함
-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 2018년 기준 「지역성평등지수」는 3개의 정책영역에 8개 분야, 2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표 Ⅱ-9〉 2018년「지역성평등지수」의 영역, 분야 및 지표 구성

정책 영역	분야	;	지표
	거미하드	①경제활동참가율(15~64세)	②성별 임금격차
니뻐드취	경제활동	③상용근로자 비율	
성평등한 사회참여	이나.	①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②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시되다이	의사결정	③관리직 비율	④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비율
	교육·직업훈련	①평균 교육년수	②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복지	①기초생활수급자 비율	②공적연금 가입자 비율
여성의	H 74	①건강관련 삶의 질(EQ-5D)	②건강검진 수검률
인권·복지	보건	③스트레스 비인지율	
	안전	①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②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71.55	①가사노동 시간	②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성평등	가족	③가족관계 만족도	④육아휴직자
의식·문화	무취 저너	①여가 시간	②여가 만족도
	문화·정보	③인터넷 이용률	

자료: 주재선 외(2018), p.11.

## □ 「지역성평등지수」의 특징(주재선 외, 2018, pp.21-22)

- 첫째, 「지역성평등지수」는 남녀의 격차를 측정하는 지수임. 격차(gap)는 빈곤, 임금, 기술수준 등이 서로 벌어져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차이(difference)와 비(ratio)를 활용해 측정함. 「지역성평등지수」는 지표의 성별격차를 남성 대비 여성 비로 활용하고 있음.
  - 수준(level)을 기반으로 하는 측정방법은 자원과 기회에 대한 남녀의 접근 정도(평등 정도)를 알 수 있고 직감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지역의 개발 수준과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을 가짐. 즉, 수준을 기반으로 지역을 측정할 경우 자원의 접근 기회가 많은 지역이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 성평등 수준에 우위를 차지하는 문제가 있음
  - 반면 격차는 지역의 발전 상태와 관계없이 비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단, 격차는 성별의 절대적 성취정도가 평등에 반영되지 못해서 직감적 이해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짐)
- 둘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성과(outcome)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임
  - 지표구성은 산정 목적에 따라 투입지표와 성과지표를 선택해 활용함. 국제성평등지수 중 OECD의 「사회제도와 젠더지수(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는 성 불평 등을 초래하는 전통, 사회적 규범, 문화적 관습 및 제도와 같은 투입지표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제성평등지수는 결과적 평등상태, 즉 남녀의 성과수준을 기반으로 성평등 수준을 측정함(「지역성평등지수」도 2011년의 경우 가점영역에서 성평등 정책 활성화 차원으로 5개의 투입지표를 구성한 적이 있지만 가점영역의 투입지표는 2012년부터 지역성평등지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 이유는 첫째로 지역성평등 수준이 가점영역의 투입지표로 인해 순위 변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둘째로 국제지표에서 알 수 있듯 제도와 정책 수단 측면에서 좋은 결과가 반드시 성과지표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셋째,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별 성평등 <del>수준을</del> 점검하고 성평등 정책의 관리를 목적으로 산정됨
  - 성평등지수 산정은 보통 '여성의 수준 상승' 혹은 '성평등' 달성이라는 목적을 가짐. 성평등지수 개발 시 '여성의 수준 상승'과 '성평등' 달성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정책적 목적 혹은 지향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만약 성평등 개선에 더 큰 지향점을 갖는다면, 지수는 성별 수준의 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게 됨(=차이가 얼마나 좁혀지고 있는가에 더 큰 관심을 두게 됨). 반면 여성 수준 상승에 더 큰 목적을 갖고 있다면, 지수는 남성수준과 관계없이 여성 수준이 낮은 부분에 더 관심을 갖게 됨(=정책의 방향이 남성과의 격차보다 여성의 수준 향상에 더 관심을 두고 접근하게 됨). 「지역성평등지수」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성별격차의 해소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산정되고 있음

## 〈표 Ⅱ-10〉 「지역성평등지수」의 특징 요약

- 1. 지역성평등지수는 성별격차(sex gap)를 기반으로 측정된 지수임.
- 2. 지역성평등지수는 성과(outcome)를 기반으로 측정된 지수임
- 3. 지역성평등지수는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점검하고 성평등 정책의 관리를 목적으로 함.

자료: 주재선 외(2018), p.22.

## 나. 선행연구 검토

- □ 한국의 경우 지역(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해당 지역의 출산율 간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 연구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비해서 아직은 그가 많지 않으며.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함
  -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광역자치단체(16개 시도)의 다년간의 합계출산육을 종속변수 로 삼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여러 가지 설명변수들을 통해 각 지역의 합계출산 율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함
  -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지역의 출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의) 혼인율, 경제 적 여건(고용률, 실업률, 지역총생산 등) 등의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각각의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살피고자 한 설명변수(예컨대 지역의 주택가격, 재정지출, 보육시설의 양과 질 등)가 합계출산율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봄
- □ 성낙일·박선권(2012)은 2009년 기준 232개 시/군/구에 대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①각 지역 별 보육시설/사교육시설의 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가 해당지역의 출산율에 미친 영향과 ②보육 시설의 품질 또는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설정한 보육시설의 규모가 출산율에 미친 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함
  -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양적 규모는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사교육시설로 측정한 사교육비 규모는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됨
    -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 보육정책의 초점이 단순히 보육시설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 라 신뢰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증가시키는 데에 주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가계소득 수준이 증가하고 여성의 취업이 보다 활성화될수록 보육시설의 신뢰성은 출산에 대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함

- □ 김민영·황진영(2016)은 2009~2013년의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자료를 이용해 주택가격(매매 가격 및 전세가격)이 출산의 수준(합계출산율)과 출산의 시기(초산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적으로 분석함
  - 분석결과 주택가격은 다른 조건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가격은 초산연령을 높이는(출산을 연기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해당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택가격은 출산의 시기를 늦추고 수준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을 줄이는 등 젊은 남녀가 장기적으로 주택구입이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의 개발은 복지를 넘어 장기적인 출산율 제고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함
- □ 이종하·황진영(2018)은 2009~2016년의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자료를 이용해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함
  - '①총세출 대비 출산지원예산 비율(%)'과 '②출생아 1인당 출산지원예산'을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정책의 정도를 측정하는 잣대로 삼아 실시한 분석에서 16개 광역자치 단체의 출산지원예산은 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그렇지만 '시'(市)와 '도'(道)를 구분해서 실시한 분석에서는 '(광역)시'의 경우 출산지원예산 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반대로 '도'의 경우 출산 지원예산은 출산율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제시됨
    - 해당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예산의 확보와 공공정책의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함

## 3. 자료 구축과정 및 분석 방법

## 가. 자료 구축과정

- □ 본 연구는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2~2017년의 패널자료를 이용해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별 성평등 수준이 합계출산율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봄
  - 이를 위해 「지역성평등지수」가 산출되어 있는 지역(16개 시도) 및 기간(2012년~2017년)을 기준으로 하여 중속변수(=16개 시·도의 합계출산율)와 각 지역의 재정 및 인구·사회적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는 통제변수들(=지역별 경제활동참가율, 조혼인률 등)을 「국가통계 포털(http://kosis.kr/index/index.do)」의 'e-지방지표(통계표)'를 통해 2012년~2017년 기간 동안의 지역별로 각각의 수치를 구축함
  -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이자 설명변수로 이용할 「지역성평등지수」의 경우 주재선 외(2018)의 『2018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보고서 내에 제시된 16개 시도의 '3가지 정책영역¹5'' 및 '8가지 분야¹6''별 성평등 수준(점수)에 대한 값을 이용함

#### 나. 분석방법

#### □ 패널회귀분석

-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6개년(2012~2017년) 동안의 지역별 성평등 수준과 합계출 산율 간에 어떠한 관련성을 살피고자 김민영·황진영(2016), 이종하·황진영(2018) 등의 연구 에 따라 패널자료에 대한 분석방법으로 비교적 널리 활용되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과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
  - 「지역성평등지수」에서 산출된 값만을 설명변수로 하여 합계출산율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모형 I]과「지역성평등지수」에서 산출된 값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나타내는 몇가지 통제 변수들을 추가로 고려한 [모형 II]로 구성하여 분석을 실시함
  - 광역자치단체의 합계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선형함수를 가정함

$$TFR_{it} = \beta_0 + \beta_1 X_{1t} + \beta_2 X_{2t} + \beta_3 X_{3t} + \ldots + \beta_{it}$$
성 평등지수  $+ \varepsilon$ 

#### 4. 분석 결과

<sup>15) &#</sup>x27;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의 3가지 정책 영역

<sup>16) &#</sup>x27;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의 8가지 분야

#### □ 2012년~2017년 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283명<sup>17)</sup>

- 만혼화나 혼인율의 저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활발해짐에 따라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기존의 논의들에 따라 통제변수로 여성과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 조혼인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고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특성 또는 예산집행을 통한 저출산 정책의 효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자 사회복지예산 비중 또한 통제변수로 활용함
- 본 절에서 관심을 갖고 설명변수로 활용하고자 한「지역성평등지수」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6개 시도의 '3가지 정책영역' 및 '8가지 분야' 별 성평등 수준(점수)에 대한 값을 이용함
  - 2012~2017년 기간 중 16개 광역자치단체 합계출산율을 단순 평균한 수치는 1.283이었으며, 남편(남성)과 아내(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은 각각 32.4세와 29.7세로 집계됨. 조혼인율의 평균수치는 5.6이었으며, 해당 기간 중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임(51.5%)
  - 설명변수로 활용한 지역성평등지수를 살펴보면 3개의 정책영역 중 여성의 인권·복지영역 이 84.6점으로 가장 높았고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의 경우 64.3점으로 가장 낮았음. 8개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에서는 보건 분야가 97.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교육·직업훈련 분야(93.6점), 문화·정보 분야(86.4점) 순으로 나타남. 의사결정 분야의 경우 29.2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됨

<sup>17)</sup> 해당 기간동안의 각 지역의 기초통계량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음.

〈표 Ⅱ-11〉 분석에 이용한 변수설명과 기초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합계출산율		1.283	0.165	0.836	1.642
	평균 초혼연	[령(남편)	32.392	0.409	31.590	33.360
	평균 초혼연	[령(아내)	29.748	0.501	28.650	31.200
통제변수	조혼인율18)		5.602	0.640	4.200	7.100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	51.536	3.942	41.400	66.100
	일반회계 중	당사회복지예산 비중(%)	29.566	7.928	11.670	45.540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점)	64.265	3.004	57.0	70.5
	정책 영역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점)	84.639	2.213	80.1	91.9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점)	71.550	2.404	66.0	80.6
		경제활동 분야(점)	69.972	4.239	55.6	77.6
서머버스		의사결정 분야(점)	29.217	5.905	16.2	41.9
설명변수		교육·직업훈련 분야(점)	93.609	1.745	89.1	96.1
(「지역성평등지수」)	분야	복지 분야(점)	84.886	4.307	73.8	94.9
		보건 분야(점)	97.158	1.230	92.0	99.0
		안전 분야(점)	71.874	6.291	60.4	91.1
		가족 분야(점)	56.734	2.258	52.9	70.9
		문화·정보 분야(점)	86.351	4.052	74.7	94.1
	N			9(	6	

주: 관측치의 수= 6년(2012년~2017년) × 16개 시도(16개 광역자치단체) = 96개임

<sup>18)</sup> 조혼인율: 인구 천명당 혼인건 수. 즉 연간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 주민등록연앙인구(각년도 7월 1일 기준)로 나누어 천분비로 나타낸 수치임.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1.00
9																1.00	-0.381***
(2)															1.00	-0.142	0.009
4														1.00	-0.093	0.175*	0.576***
@													1.00	0.809***	-0.455***	0.414***	0.292***
(2)												1.00	0.313***	0.574*** 0.809***	0.037	-0.207** 0.414***	0.675***
(2)											1.00	0.0932	-0.072   0.404***   0.313***	0.158	-0.531***	0.185*	-0.093
(2)										1.00	0.145	-0.243** 0.0932	-0.072	-0.290***	-0.427***	-0.238**	-0.218**
6									1.00	-0.339***	-0.017	0.138	0.405***	0.366***	-0.229**	0.343***	0.402***
@								1.00	0.543***	-0.296***	0.388***	0.336***	0.666***	).623***	-0.343***	0.398***	0.251**
©							1.00	0.259**	0.141	-0.440***	-0.160 0.388***	0.767***	0.231**	).657***	0.410***	-0.310***	0.748***
9						1.00	0.675***	0.444**	0.387***	-0.137   -0.277***   -0.418***   -0.440***   -0.296***   -0.339***	-0.048	0.478*** 0.767*** 0.336***	.452*** 0.467*** 0.332*** 0.231** 0.666*** 0.405***	.555*** 0.352*** 0.566*** 0.657*** 0.623*** 0.366*** -0.290***	-0.218** -0.360*** 0.277*** 0.410*** -0.343*** -0.229** -0.427*** -0.531***	-0.003 -0.310*** 0.398*** 0.343*** -0.238**	0.573*** 0.748*** 0.251** 0.402*** -0.218** -0.093 0.675*** 0.292*** 0.576***
9					1.00	0.248**	-0.073	0.731***	0.729*** 0.387***	-0.277***	0.150	0.012	0.467***	).352***	-0.360***	-0.088 0.590***	0.038
4				1.00	0.079	0.380*** 0.248**	.570***	0.463***	0.108	-0.137	0.546***	0.884***	0.452***	0.555***	-0.218**	-0.088	0.524***
(e)			1.00	0.193*	0.346***	-0.038	-0.222** 0	-0.535*** 0.686*** 0.468*** 0.463*** 0.731*** 0.444*** 0.259**	0.213**	0.693***	0.387*** 0	0.016	-0.540***   0.484***   0.438***   0	0.198* (	- ***699.0-	0.095	0.030 0
@		1.00	0.099	0.398***	0.619***		0.602***	J.686*** (	0.626***	-0.487***	0.010	0.468***	D.484**		- 680.0	0.219**	0.540***
Θ	1.00	***069.0-	-0.164	-0.528*** 0.398***	-0.365*** 0.619*** 0.346***	-0.589*** 0.903***	-0.675*** 0.602***	-0.535*** (	-0.505***   0.626***   0.213**	0.292***   -0.487***   0.693***	-0.024	-0.615*** 0.468***	-0.540***	-0.786*** 0.665***	0.131	0.110	-0.737*** 0.540***
	9	©	(e)	4	9	9	©	@	6	(2)	(E)	(2)	@	(14)	(2)	9	(2)

주: \*\*\* p(0.01, \*\* p(0.05, \* p(0.1 ① 합계출산율, ②성평등한 사회참여(점), ③여성의 인권·복지(점), ④성평등 의식·문화(점), ⑤경제활동 분야(점), ⑥의사결정 분야(점), ⑦교육·직업훈련 분야(점), ⑥복지 분야(점), ⑨보건 분야(점), ⑩안전 분야(점), ⑪기족 분야(점), ⑩문화·정보 분야(점), ⑬평균 초혼연령(남편), ⑭평균 초혼연령(아내), ⑯조혼인율, ⑯여성의 경제활동참기율, ⑰일반회계 중 사회 복지예산 비중(%)

- □ (3개)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각 영역의 영향력 이 달리 나타남((표 II-13) 참조)
  - (3개)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만을 놓고 합계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모형 I]에 서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의 계수값을 나타냄
    - 이는 해당영역의 성평등 수준의 개선은 출산율을 낮춘다고 해석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됨.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가 여전히 출산을 가로막는 일종의 선택이나 기회비용의 문제로 작용(예컨대 혼인·출산 등에 따른 경력단절 문제 등)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을 염두에 둘 때 (경제활동 등) 여성의 사회참여가 이전에 비해 활발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회참여를 선택했을 때 출산 및 자녀양육을 동시에 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풀이해볼 수 있음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가사노동의 분담이나 가족관계 만족도, 여가 시간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일지라도 출산율이 높지 않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출산이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들의 가치관의 변화(가족에 대한 인식이나 여가중시에 대한 가치관 등)가 있음을 감안할 때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나 여가에 대한 생각 등 저출산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고민해볼 여지가 있음
  -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 통제변수들을 동시에 넣고 합계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모형 II]에서도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의 경우 (-)의 계수값을 나타냄
  - Fixed effect model을 통한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남성의 평균초혼연령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높았으며,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은 낮음. 또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전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이 저출산 문제의 완화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음

⟨표 11-13⟩ (3개)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합계출산율 간의 패널다중회귀분석 추정결과

				[[ 원리]			변	[[ 원]	
		Fixed effect model	ct model	Random effect model	ect model	Fixed effect model	et model	Random effect model	fect model
		β	S.E.	β	S.E.	β	S.E.	β	S.E.
상수하		3.831***	0.436	3.976***	0.425	4.830**	1.698	4.067***	0.922
	평균 초혼연령(남편)	ı	ı	I	ı	0.207***	0.059	0.220***	0.043
	평균 초혼연령(아내)	I	I	I	I	-0.321***	0.070	-0.309***	0.046
통제변수	조후 연율	I	I	I	I	0.064*	0.037	0.070***	0.025
	여성의 경제활동참7율	I	ı	I	ı	0.001	0.005	0.005**	0.003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	I	I	I	I	**600.0	0.004	0.001	0.003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점)	-0.013**	0.005	-0.017***	0.005	-0.008	0.005	-0.014**	0.004
설명변수 (성평등지수)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점)	0.002	0.005	0.002	0.005	0.001	0.005	0.002	0.005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점)	-0.027***	0.005	-0.025***	0.005	-0.014**	0.005	-0.010***	0.004
	$R^2$	0.592	92	0.589	68	0.715	'15	969'0	96
	F-value	24.84**	* * *	76.93***	***	41.97***	****	731.43***	** ** E:
ΙĮΟ	하우스만 검정값 $(\chi^2)$ , $[p$ 값]		4.76	4.76 [0.19]			9.95	9.95 [0.27]	
	N		O)	96			3,	96	

주: \*\*\* p⟨0.01, \*\* p⟨0.05, \* p⟨0.1

#### □ 이어 (8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합계출산율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II-14〉에 제시함

- (8개) 정책 영역별 성평등 수준만을 놓고 합계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모형 I]에 서는 '의사결정 분야'와 '복지 분야'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의 계수값을 나타내었고, '보건 분야(점)'와 '안전 분야(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보임
  -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 강화(보건·안전 분야)는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음. 출산을 둘러싼 안전한 환경 구축은 모두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숙제임
  - 성평등주의적 문화/사회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사결정 분야'의 경우 아직까지 우리사회의 성평등을 둘러싼 사회시스템적 측면이 출산율의 반등을 이루어 낸 서구사회만큼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음
  - 한국을 비롯한 21개국의 출산에 대해 분석한 연구(계봉오·김영미, 2016)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장, 가족복지, 문화적 측면에서 성평등주의가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국가들에서 뚜렷하게 출산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이와 함께 성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살핀 연구에서는 U자형의 관계<sup>19)</sup>를 나타냄(Esping-Anderson & Billari, 2015; 계봉오·김영미, 2016: 37에서 재인용)
  - 이에 비추어볼 때 성평등주의적 사회문화의 확산이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화, 규범화가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특히 여성이 취업 상태에 있을수록, 고학력일수록, 성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출산이 성평등주의 정도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이 제시된 연구결과(계봉오·김영미, 2016)에 비추어 볼 때 (이전에 비해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진 한국사회에서) 거시적 차원에서의 성평등주의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출산을 둘러싼 의사결정이 쉽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함을 암시함

<sup>19)</sup> 이와 유사하게 여성고용과 관련해서도 유럽의 경우 여성고용 증가 초기에 출산율이 하락하였다가 사회시스템 변화가 뒷받침되면서 출산율이 상승함(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2019: 3).

(표 Ⅱ-14〉 (8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합계출산율 간의 패널다중회귀분석 추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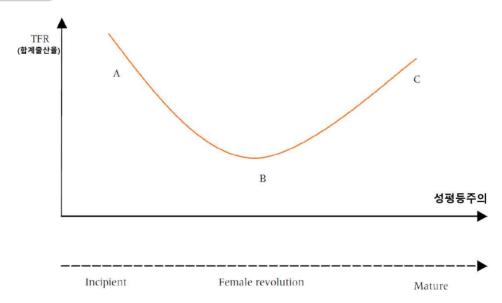
상수항 BGD 조혼연령(남편) BGD 조혼연령(아내) BGD 조혼인율 G어성의 경제활동참가율 Q어의 경제활동참가율 Q어의 경제활동 분야(점) GM활동 분야(점) DH 결정 분야(점) 교육·직업훈련 분야(점) 교육·직업훈련 분야(점)	Fixed effect model   β   S.E.   2.692   2.874	S.E.	Bandom offect model	100000 +000				
명균 초혼연령(남편 평균 초혼연령(아내 평균 조혼인율 (여성의 경제활동참) 일반회계 중 사회복 의사결정 분야(점) 교육·직업훈련 분야 보수 복지 분야(점)	β 2.692 - - -	S.E. 2.874	מומסוו מ	lect model	Fixed effe	Fixed effect model	Random effect model	fect model
명균 초혼연령(남편 명균 초혼연령(아내 조혼인율 여성의 경제활동참 역성의 경제활동참 의반회계 중 사회복 일반회계 중 사회복 의사결정 분야(점) 교육·직업훈련 분야 보수 복지 분야(점)	2.692	2.874	β	S.E.	β	S.E.	β	S.E.
평균 초혼연령(남편 평균 초혼연령(아내 조훈인율 여성의 경제활동참 일반회계 중 사회복 경제활동 분야(점) 의사결정 분야(점) 교육·직업훈련 분야 복지 분야(점)	1 1 1 1		4.940***	1.289	5.635*	3.164	3.878*	2.071
평균 초혼연령(아내 조혼인율 여성의 경제활동참? 일반회계 중 사회복 경제활동 분야(점) 의사결정 분야(점) 교육·직업훈련 분야 복지 분야(점)	1 1 1	1	ı	ı	0.213***	0.046	0.208***	0.044
조혼인율 여성의 경제활동참 일반회계 중 사회복 경제활동 분야(점) 의사결정 분야(점) 교육·직업훈련 분야 복지 분야(점)	1 1	1	ı	I	-0.172**	0.078	-0.212***	0.062
여성의 경제활동참           일반회계 중 사회복           경제활동 분야(점)           의사결정 분야(점)           교육·직업훈련 분야           복지 분야(점)	1	1	I	I	0.093***	0.031	0.094***	0.036
일반회계 중 사회복 경제활동 분야(점) 의사결정 분야(점) 교육·직업훈련 분야 복지 분야(점)		ı	ı	ı	0.001	0.004	0.004	0.003
경제활동 분야(점) 의사결정 분야(점) 교육·직업훈련 분야 복지 분야(점)	- (%)	1	1	ı	0.010***	0.003	0.003	0.004
의사결정 분야(점) 교육·직업훈련 분야 복지 분야(점)	0.003	0.005	-0.001	900.0	0.003	0.005	0.000	0.005
교육·직업훈련 분야 복지 분야(점)	**900.0-	0.002	-0.004***	0.002	-0.004*	0.002	***500.0-	0.002
	-0.022	0.032	-0.033**	0.015	-0.078**	0.026	-0.032	0.028
	-0.016**	0.004	-0.014***	0.004	-0.011	0.007	+800'0-	0.004
(성평등지수) 보건 분야(점)	0.026**	600.0	0.013**	0.007	0.019	0.011	0.003	0.008
안전 분야(점)	0.003**	0.001	0.002*	0.001	0.001	0.001	0.001	0.001
가족 분야(점)	-0.004	0.002	-0.002	0.003	0.000	0.003	0.002	0.003
문화·정보 분야(점)	-0.007	0.005	900'0-	0.004	-0.010**	0.004	-0.005	0.003
$R^2$	0.719	6	0.7	0.709	0.7	0.791	0.7	0.754
F-value	71.55***	* * *.	354.3	354.30***	185.	185.75***	3525.75***	75***
하우스만 검정값 $(\chi^2)$ , $[p$ 값]		15.84	15.84 [0.04]			26.70	26.70 [0.01]	
N		00	96			0,	96	

←: \*\*\* p⟨0.01, \*\* p⟨0.05, \* p⟨0.1

#### □ 성평등 수준(성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

- 지역성평등지수와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과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이나 '의사결정 분야' 등 성평등한 사회문화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표의 경우 적어도 현재까지는 합계출산율과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살핀 연구에서는 U자형의 관계를 제시하였는데 한국 또한 그러한 변화양상을 따를지 귀추가 주목됨.
  - 이러한 가능성은 '다중상태 평형이론'을 통해 설명되기도 함(Esping-Anderson & Billari, 2015). 해당 이론에서는 성평등주의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 초기에는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일정한 임계점(tipping point)을 지나게 되면 성평등주의의 확산이 출산율의 반등으로 연결될 것으로 주장함(김영미·계봉오, 2016: pp.35-37)<sup>20)</sup>

# [그림॥-9] 다중상태 평형이론에서 가정하는 성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의 관계



자료: Esping-Anderson & Billari(2015); 계봉오·김영미(2016), p.36에서 재인용.

<sup>20)</sup> 성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 간의 변화의 속도와 양상은 신뢰수준과 계층 간 통합 정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 성평등주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출산율의 하락 및 회복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반면, 성평등주의의 확산이 느린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과정이 보다 완만한 속도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영미·계봉오(2016) pp.33-37에 제시되어 있음.

## 제 3절

## 소결 및 제언

## 1. 출산율 결정 요인 분석

## □ 본 분석은 인구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최근의 출산율을 분석함

- 요인분해기법을 통하여 출산율을 유배우율과 유배우 출산율로 분해하고, 유배우율이 출산 율에 지속적으로 음의 영향을 주었으며, 유배우 출산율은 최근 3년간 음의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였음
- 템포효과를 분석하여 최근 3년간 만혼화가 저출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 출산현상과 혼인현상의 약화된 관계를 포착함.

- 이러한 분석은 과거의 가치관인 혼인이 출산의 전제조건이며, 혼인을 하면 출산을 한다는 일방향적인 전제가 있었으므로 가능했음
- 그러나 최근의 저출산 요인을 분석하면, 혼인과 출산의 관계가 점점 약해지고 있으며, 더이상 비혼의 확산과 만혼화 현상이 저출산을 야기한다고 할 수 없음.
  -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에 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이라는 조어가 등장 하여 결혼을 하였지만 아이없이 살아가는 맞벌이 부부가 사회적 현상이 되었음을 시사한 바가 있음(최샛별 외. 2015)
  - 또한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무자녀 계획"은 자녀 중심으로 삶이 재편되는 한국 특유의 가족주의에 대한 소극적/적극적인 반항의 발로로 해석되기도 함(이민아. 2013)

#### □ 저출산현상 분석을 위한 데이터 생산

- 기존과는 다른 기제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을 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발적/비자발 적 무자녀혼인비율이나, 신혼기간 추정을 위한 조사 등이 필요함
- 또한 해당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학적인 변수와 더불어 이러한 변수에 영향을 받고 실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가치관을 포착하는 변수가 필요함
  - 경제적 여건이 동일하더라도,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혼인 및 출산에 따른 의사결정은 달라지며, 동일한 인물일지라도 개인이 맞이하는 소득수준이나 시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달라질 것임. 따라서 개인이 직면하는 구체적인 경제사회학적 변수가 필요하게 됨
  - 한편, 경제시회학적 변수는 개인의 선택을 간접적인 정황증거로써 설명한다는 한계를 지니

기도 함. 따라서 개인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가치관일 것이며, 그 가치관을 직접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함

## 2. 지역성평등 수준과 출산율 분석

#### 가. 자료의 한계

#### □ 이용가능한 설명변수가 제한적

- 출산에는 다양한 요인들(예컨대 자녀양육비용, 교육비용, 주거비, 보육시설 등)이 관련을 맺고 있을 것이 자명하지만 이를 계량화된 수치로 반영하기에는 제약이 상당함
  - 「지역성평등지수」등 아직까지는 장기간에 걸쳐 자료가 구축된 것이 아니기에 분석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존재함. 출산율 등 인구학적 측면의 변화는 경우 전쟁·자연재해 등의 상황에 직면한 경우를 제외하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음. 보다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가 구축된다면 보다 (저)출산과 관련된 보다 분명한 요인들을 밝혀낼수 있을 것임
  - 16개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분석이 이루어져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음.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또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기초자치지단 체 또는 읍·면·동 수준에서의 정책이나 생활여건이 우리의 삶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절에서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특성이나 국가 차원의 정책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함

#### 나. 해석상의 주의점

#### □ 출산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인과관계'로 단언하기가 어려움

○ 앞서 제시된 통계학적 분석결과가 출산과 관련한 '인과관계'로 해석하기 어려움. 정책이나 성평등적인 문화의 확산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출산의 경우 즉각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사건 이 아니므로 분석과정에서 시차(time-lag)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또한 성평등 수준과 합계출산율 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합적 결과(aggregated data)로 구성된 변수 이용해 도출된 분석결과를 개인(또는 가구) 차원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생태학적 오류 (ecological fallacy)를 범할 가능성이 높음

#### 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나 정책의 효과성 파악을 위한 자료의 축적이 필요
  - '출산율의 저하'라는 명백한 수치가 제시되고 있고, 정책적 관심 또한 높은 수준이지만 언론 보도나 정치적 논의 등에 비해서 저출산 현상을 둘러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은 상대적 으로 미흡함. 이는 분석을 위한 자료(data)의 부족에서도 일정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경우 생애과정에 있어 일련의 순서규범이 서구에 비해서 비교적 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학교졸업→노동시장 이행(경제적 독립)→혼인→출산'으로 이어지는 일 련의 과정에서 시기(연령)나 각 생애단계로의 이행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개인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한 코호트(cohort) 자료의 구축이나 연구가 쉽지는 않은 실정임

## [그림॥-10] 생애주기를 염두에 둔 출산관련 연구자료의 구축



- △ 「여성가족패널(KLoWF)」,「한국노동패널(KLIPS)」,「한국복지패널(KoWePS)」등 장기간 추적조사 자료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새롭게 혼인/출산을 경험한 이들이 조사에 포함되지만 이 또한 혼인/출산에 대해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조사가 아니기에 연구/분석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
- '노동시장 이행~혼인~출산'을 아우름과 동시에 혼인·출산을 둘러싼 가치관 등에 대해 다각 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임. 더욱이 남편과 아내 모두에 대해서 혼인 이전의 상황까지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더더욱 부족하며, 자녀출산과 관련해 그들이 이용가능한 지역사회의 (보육) 시설 및 주거환경 등과 여가, 통근 등 생활전반을 알 수 있는 대규모의 자료가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임
- 인구의 전·출입, 신도시 형성이나 도시재생 과정 등에 있어서 출산을 둘러싼 자료(신혼부부

- 의 수, 출산아 수, 양육관련 시설의 형성과 소멸, 대중교통의 이용객 증감 등) 구축 및 이에 대한 연구/분석 또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해서 이들 정책의 수혜정책의 종류, 수혜집단 vs. 비수혜집단, 수혜빈도·단계 등 보다 과학적인 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보다 면밀한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Ⅲ. 한국 가족 다양성 증가와 저출산

#### 제 1절

# 한국 가족의 다양성 증가와 저출산의 관계

# 1. 가족 다양성 증가

- □ 최근 한국 가족의 변동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 퇴색과 지속 여부를 고민할 정도로 급격하고 근본적임
  - 기본적으로 1인 가구 증가, 2세대 가구 감소 등 가족구성이 다양화되고 있음. 또한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자녀를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인식도 줄어들고, 동거나 이혼, 재혼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아지는 등 가족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 또한 가족구성원 개개인을 존중하고 독립성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늘어나고 있음.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가족구성원 내 개인 존중 가치의 증가는 한국 가족에서 가족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현상임
  -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2018 년 한국은 합계출산율 0.98명의 세계 초저출산국이 되었고 인구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음

#### 가. 가족구조의 변화

- □ 2000년 이후 2세대 이상 가구 비중은 감소하고 무자녀 부부 가구, 1인가구 등이 증가하여 가족 구성이 다양화되고 있음
  - 특히 1인가구는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 15.5%에서 2018년 29.3%로 10가구 중 3가구는 1인가구임. 반면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되어온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은 감소 추세

-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는 2000년에 48.2%로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웠으나 2018년에 30.6%로 감소. 2018년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와 1인가구의 비중 차이는 1.3%p에 불과함
 ○ 1세대 가구 중에서는 무자녀 부부가구의 비중 증가가 주목할 변화로 2000년 12.3%에서 2018년 16.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표 Ⅲ-1〉 세대별 가구 구성 분포

(단위: %)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7년	2018년
	부부	12.3	14.2	15.4	15.6	15.9	16.3
	부부+미혼형제자매	0.1	0.1	0.1	0.1	0.1	0.1
1세대	부부+기타친인척	0.1	0.1	0.1	0.0	0.0	0.0
기에네	가구주+미혼형제자매	1.2	1.3	1.1	1.1	1.0	1.0
	가구주+기타친인척	0.3	0.2	0.5	0.2	0.1	0.1
	기타	0.2	0.3	0.3	0.5	0.5	0.5
	부부+미혼자녀	48.2	42.2	37.0	32.2	31.3	30.6
	부+미혼자녀	1.5	1.8	2.0	2.8	2.6	2.6
	모+미혼자녀	6.3	6.8	7.2	8.0	7.6	7.5
	부부+양친	0.2	0.1	0.1	0.1	0.1	0.1
2세대	부부+한부모	0.8	0.8	0.8	0.7	0.6	0.6
	부부+미혼자녀+부부미혼 형제자매	0.7	0.5	0.3	0.4	0.4	0.3
	조부모+미혼손자녀	0.3	0.4	0.7	0.6	0.6	0.5
	기타	8.2	2.8	3.2	4.1	4.2	4.2
	부부+미혼자녀+양친	1.2	0.9	0.8	0.6	0.5	0.5
3세대	부부+미혼자녀+부친 또는 모친	4.5	3.6	3.0	2.4	2.2	2.1
기타		2.6	2.4	2.4	2.4	2.1	1.9
	4세대 이상	0.2	0.1	0.1	0.1	0.0	0.0
	1인가구	15.5	20.0	23.9	27.2	28.6	29.3
	비친족가구	1.1	1.4	1.2	1.1	1.6	1.7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 가족구성의 변화에 따라 가구 규모가 축소되어 3인 이하의 가구 증가 추세

- 가구원수별 가구 비중을 보면 2018년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의 순임. 2000년의 경우 5인가구가 가장 많고 다음이 4인가구, 3인가구의 순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여년 사이에 한국인의 가구 규모 감소는 급격히 일어남
- 그 결과 가족이라고 하면 주로 떠올리게 되는 부부와 2명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4인가구는 2018년 17.0%로 그 비중이 4번째임

### 〈표 Ⅲ-2〉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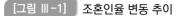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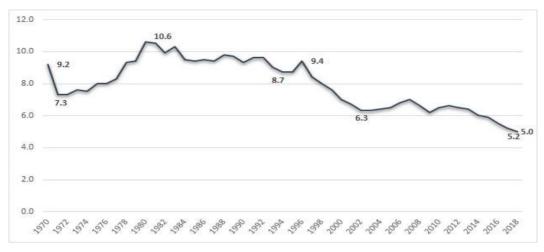
가구원수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7	2018
1인가구	4.8	6.9	9.0	12.7	15.5	20.0	23.9	27.2	28.6	29.3
2인가구	10.5	12.3	13.8	16.9	19.1	22.2	24.3	26.1	26.7	27.3
3인가구	14.5	16.5	19.1	20.3	20.9	20.9	21.3	21.5	21.2	21.0
4인가구	20.3	25.3	29.5	31.7	31.1	27.0	22.5	18.8	17.7	17.0
5인가구	98.6	76.9	63.9	40.6	32.4	28.5	27.7	26.2	25.5	4.3
6인가구	14.7	12.4	5.9	3.8	2.4	1.7	1.4	1.1	1.0	0.9
7인가구 이상	15.2	7.2	3.9	1.7	0.9	0.6	0.5	0.3	0.3	0.3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나. 가족가치관과 가족관계의 변화

- □ 결혼 및 자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혼인 감소, 만혼화, 자녀출산 기피 현상 나타남
  - 2018년 조혼인율은 5.0‰(통계청, '2018년 혼인·이혼 통계')임. 이 수치는 1980년 10.6‰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임. 혼인 건수는 1980년 403,031건에서 2018년에는 25만7천여 건을 기록함(통계청, 1980; 통계청, 2018).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 결혼에 대한 태도를 보면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비율 감소.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해야한다' 응답 비율을 보면 1998년에는 미혼남성 73.2%, 미혼여성 51.4%임. 그러나 2018년에는 미혼남성 36.3%, 미혼여성 22.4%로 나타나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크게 감소함
  - 특히 미혼 여성은 10명 중 2명 내외만이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어 남성보다 동의 비율이 더욱 낮았음

# 〈표 Ⅲ-3〉 결혼에 대한 태도(1998년, 2018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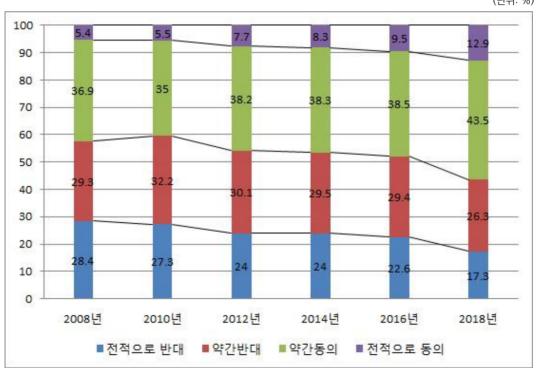
		해야 한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
201013	미혼남성	36.3	54.8	3.6	5.3
2018년	미혼여성	22.4	67.2	7.2	3.3
100013	미혼남성	73.2	23.0	0.8	3.1
1998년	미혼여성	51.4	43.3	1.9	3.3

출처: 통계청(1998, 2018), 사회조사.

- □ 반면 동거나 비혼 출산에 대한 동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법률혼에 기반한 결혼과 출산 이외에 다른 방식의 가족 형성을 선택하는 집단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
  -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동거하는것에 대한 동의 비율은 2008년 42.3%에서 2018년 56.4로 증가
  -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반대 69.8%, 동의 30.2%로 여전히 반대 의견이 더 많지만, 과거에 비해 동의하는 비율은 증가 추세임
  - 2008년 비혼 출산에 대한 동의 비율은 21.5%, 2018년 30.2%로 8.7%p 증가

# [그림 Ⅲ-2]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13세 이상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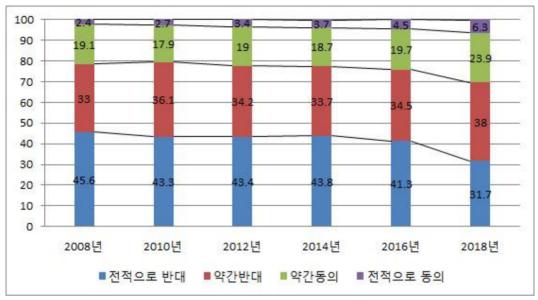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그림 Ⅲ-3]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13세 이상 인구)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 결혼가치관 및 가족형성의 다양성 증가와 더불어 가족관계 측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핵심은 집단으로서 가족도 중요하지만 가족구성원 개개인을 존중하는 것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 점임
  -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자녀를 부모에 소속된 존재로 보기보다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이며 이제 대부분 수용되고 있는 가치임. 부부관계에서도 부부 개인의 독립성이나 각자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대한 논의가 있음. 단, 가족 구성원 개개인 존중 가치에 대한 요구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거의 없음
  - 통계수치로 확인 가능한 내용은 통계청 「사회조사」의 '결혼에서 당사자보다 가족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문항에 대한 응답 변화임
    - 2008년 대비 2018년 연령대가 젊을수록 반대 비율이 증가. 60세 이상은 2008년에서 2018년까지 반대 비율에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10대, 20대, 30대는 2008년 대비 2018년에 반대 비율이 늘어남. 성별로는 여성의 반대 비율이 남성보다 높고, 여성은 반대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확대가족 중심의 가족보다는 핵가족 중심으로, 가족 안에서도 가족구성원 개개인을 중요시 하는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 〈표 Ⅲ-4〉 결혼은 당사자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된다 반대 비율-연령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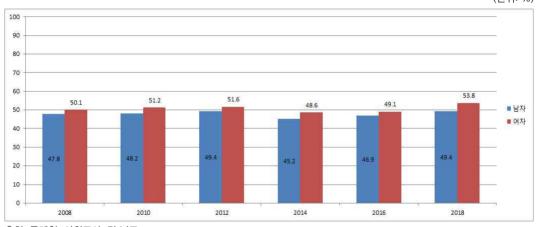
						(E11.70)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19세 이하*	53.9	54.5	52.5	51.2	50.8	56.1
20~29세	54.4	52.8	54.3	52.1	54.7	59.2
30~39세	52.0	53.4	55.3	49.4	50.2	55.3
40~49세	48.4	51.9	53.1	48.9	49.9	54.9
50~59세	44.8	45.8	47.5	43.7	46.3	48.8
60세 이상	42.3	42.2	41.8	39.8	40.2	41.9

주 \* 2008년~2010년 13~19세/2012년~2018년15~19세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그림 III-4] 결혼은 당사자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된다 반대 비율-성별

(단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2. 가족 다양성 증가와 저출산의 관계

- □ 한국 가족의 변동을 한마디로 하면 가족의 다양성 증가라고 할 수 있음
  - 개개인의 생애주기와 가족주기는 최근 가족 변동의 흐름 속에서 과거와 달리 단선적인 경로 를 보이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지금까지 대체로 개인의 생애주기를 보면 학업-졸업-취업-결혼-출산이라는 경로를 거치고 가족주기로는 결혼으로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시기를 거쳐서 자녀의 결혼을 통한 분가로 다시 축소되는 과정이었음

○ 그러나 결혼 및 자녀 가치관 등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족생애 주기는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 가족은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음

### □ 이러한 한국 가족의 다양성 증가는 저출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 나는 현상임. 즉 한국 사회의 가족규범이나 가족문화 등 문화적 요인이 결혼이나 자녀 출산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경제적 요인 관련 정책 이외에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접근도 필요함을 의미함. 일례로 유럽국가에 비해 한국이 혼외출생자가 매우 적은데 유럽국가에서는 비혼, 동거 등 결혼제도 밖에서의 출생에 대하여 사회적 편견이거의 없고, 법적 제도적 차별도 없음. 그러나 한국은 법률혼에 기반한 정상가족 이외의가족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많은 실정임. 그래서 동거커플이 자녀를가지게 되면 대부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어 혼외출생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임. 이는 역으로 법률혼을 기피하는 동거 커플은 가급적 출산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글 것을 시사함. 법률혼을 기피하고 비혼 동거를 선택하는 사유를 보면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그 중 한국 사회의 결혼 및 가족문화에 대한 거부가 있음. 즉 결혼이나 배우자 선택에 대한 규범이나 개인보다는 확대가족 관계를 중시하는 가족문화가 제도적 결혼을 기피하는요인이 되고 있음. 그 결과 가족을 형성하기를 거부하고,과거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가족과는 다른 가족의 모습을 선택하려는 개인이 늘어나면서 한국 가족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가족 다양성 증가로 나타남
- 한국 가족의 다양화는 겉으로는 가족 형태 및 가족구성의 변화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있으며, 저출산을 초래하는 사회문 화적 배경이 되고 있음

# 제 2절

# 가족 다양성 포용 수준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해외 사례

- 1. '상대적 고출산' 국가와 초저출산 경험 국가 간 비교
  - □ '상대적 고출산' 국가의 가족 다양성 포용 수준 높음
    - 초처출산을 경험한 국가의 경우 성평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법률혼 가족을 규범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강함. 반면 '상대적 고출산' 국가인 스웨덴 등은 성평등 수준이 높고 가족 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음

### [그림 Ⅲ-5] '상대적 고출산' 국가와 초저출산 경험국가 비교

	상대적 고출산 국가	초저출산 경험 국가
성평등	높은 수준(*영미권은 기회의 평등)	강한 성별역할분리 규범 존재
가족 형태 다양성	정상규범으로서 법률혼 가족 감소	정상규범으로서 법률혼 가족
다문화성	높은 수준(*노르딕 국가의 통제된 개방)	높은 수준
일 가정 양립	남녀의 공통 과제로서 제도화·규범화	여성적 과제 → 고학력 여성 중심 출산 기피 전략
사회적 돌봄 지원	서비스와 현금급여의 조화 (*영미권은 저비용 민간 영리 중심)	독일어권 → 현금급여 중심 남유럽권 → 가족 책임 강조
보육 인프라	공보육 중심 (*영미권은 민간 영리 중심)	독일어권 → 민간 비영리 중심 (1~2세 아동 지원 서비스 부족) 남유럽권 → 가족 책임 강조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초등교육의 변화 필요성과 쟁점" 제7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자료집, p27

#### 2. 해외국가 가족 다양성 포용 수준과 출산율

- 가. 프랑스의 PACS 도입과 혼인율
- □ PACS 제도의 법적 성격 및 효과
  - 간단히 비교하면 PACS 제도는 혼인과 단순동거의 중간 형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PACS는 혼인 제도에 비하여 사회경제적 혜택은 유사하지만 혼인으로써 맺어지는 결합 및 해소에 드는 비용이 훨씬 적다는 특징이 있음.
  - 자녀 양육에 대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음. 첫째, 아버지의 친권 인정과 관련하여 결혼과 달리 PACS 중에 낳은 아이에 대하여 아버지임을 확인하는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친권이 성립함. 둘째, 부의 친권 성립 후 1년 이내에 자동적으로

공동양육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부의 친권이 확립된 후에 부모의 상의하에 아이의 성姓)을 결정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의 친권이 성립되며 PACS 하에서 결혼 커플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결혼 커플과 마찬가지로 공동의 생활비 부담 의무가 있으며, 사회보장 급여 또한 건강보험 및 실업수당에 대해서도 본인과 파트너에게도 혜택이 부여되는 장점이 있음. PACS의 해소 시에는 결혼 커플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다는 주요 특징이 있음. 세부적으로는 재산권에 대하여 결혼 커플의 경우 법정부부재산제가 적용되어 배우자의 동의하에 처분할 수 있으나 PACS의 경우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각자 절반씩 소유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재산 처분 시에도 상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는 본인 명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처분은 불가함. 그러나 PACS의 경우 파트너의 부양 의무에 따른 거주권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결혼과 달리 위자료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상속권에 대해서도 법정 상속권이 없으므로 결혼 부부만큼의 상속의 권리를 누릴 수는 없으나 PACS 등록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는 본인 몫을 상속 받을 수 있음

#### □ PACS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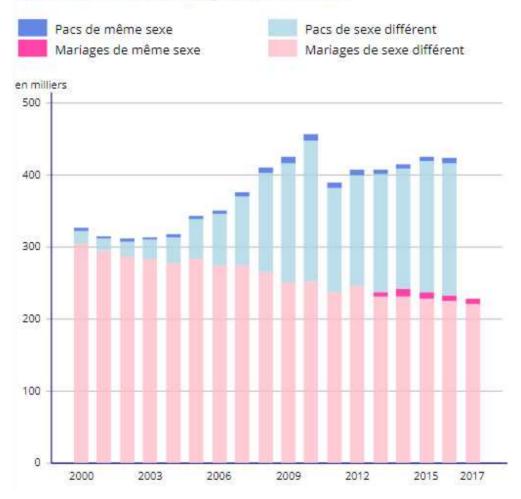
- 1999년 PACS 제정 이후에 신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현재 프랑스의 커플들은 혼인보다 PACS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처음 PACS가 제정되었던 사회적 배경과 의도와 달리 대부분의 PACS는 주로 이성 커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처음 도입된 1999년에는 6,151쌍이 등록되었다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약 20만 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인율은 점차 감소하여 현재는 25만 건 미만으로 나타남. 단, 2000년 대비 PACS와 혼인을 합한 수치는 증가 추세임. PACS 신고건의 증가 추세와 함께 동시에 프랑스에서는 혼외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혼외 출산 비율은 1998년 41.7%에서 2012년에는 56.7%로 증가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1.7명에서 증가하여 약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 PACS 제도가 주는 시사점

○ 법적 혼인과 비교하여 다소 '가벼운' 결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 법적 부부와 차별이 없다는 점과 단순 동거에 비하여 세금 감면, 친권 인정 등과 같은 제도적 혜택에 따른 장점이 PACS의 성공적인 안착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프랑스의 출산율 상승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가족 정책을 기반으로 하면서 더불어 PACS 제도의 발전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임. 프랑스의 출산율 증가는 사실상 비혼출산율의 증가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PACS로 인하여 법적 혼인 외의 출산이 인정 받고, 양육 환경 또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여겨짐. 이를 통하여 혼외 출산을 제도적으로 준비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 [그림 Ⅲ-6] 프랑스의 혼인율 및 PACS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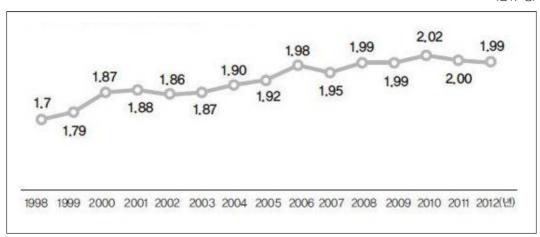
# Évolution du nombre de mariages et de Pacs conclus



주: Pacs de même sexe: 동성PACS, Pacs de sexe différent: 이성PACS, Mariages de même sexe: 동성혼, Mariages de sexe différent: 이성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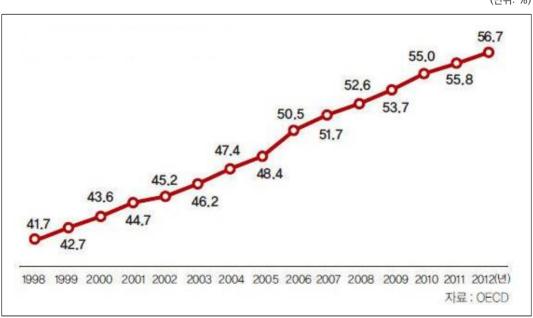
# [그림 III-7] 프랑스 합계출산율 변화(1998~2012)

(단위: 명)



# [그림 Ⅲ-8] 프랑스 비혼출산율 변화(1998~2012)

(단위: %)



# 나. 스웨덴의 비등록 동거에 관한 보호 법률21)

□ 스웨덴은 유럽국가에서 상대적 고출산 국가에 해당되며 197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성평등 정책 및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을 추진해왔음

#### □ 비등록 동거 보호 정책 추진 동향

- 스웨덴은 1960년대부터 2004년까지 가장 낮은 혼인율과 가장 높은 비혼 동거 커플의 수를 기록함(Lind, G., 2008: 830; 박복순 외, 2019:68에서 재인용)
- 스웨덴 법무부는 1969년 "새로운 형태의 법률은 서로 다른 형태의 함께 사는 것과 다른 도덕적 견해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중립적이어야 한다. 혼인은 가족법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가져야만 하지만, 가족법은 혼인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고자 가족을 꾸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어려움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Ministry of Justice, 1969; 박복순 외, 2019:69에서 재인용)"고 원칙을 밝힘(박복순 외, 2019:69)

# □ 비등록 동거 관계 보호 법률의 내용

- 1974년부터 스웨덴은 비등록 동거 관계에 대한 보호를 하는 법률을 갖추고 있었음(Lag, 1973: 651; 박복순 외, 2019:68에서 재인용)
- 현재 2003년 동거법(sambolag, 2003: 376; 박복순 외, 2019:69에서 재인용)은 18세 이상 성인 간 비등록 동거 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15세 이상 미성년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하에 가능함. 상속권은 없으며, 생존파트너는 공동 주거의 집과 집기에 대한 권리가 있음(박복순 외, 2019:69)
- 동거법의 지위를 인정하는 법령의 예로는 일방의 사망 시 생존 동거인의 연금 수령과 관련된 스웨덴 사회보장법, 생존 동거인의 임대차 승계를 명시한 스웨덴 부동산법 등이 있음. 그 외에도 스웨덴 사회보장 관련법에는 '아이가 있는 가구'라는 중립적 표현을 통하여 관계의 종류와 인정과 상관없이 보호를 하는 조항이 있음(박복순 외, 2019:69)

<sup>21)</sup> 박복순 외(2019). 『가족 다양성 포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68-69의 스웨덴 부분을 발췌 인용하였음

# 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변화와 출산율

□ 한편 초저출산을 경험한 국가인 독일은 최근 사회적 돌봄을 확대하고 가족정책 지출을 증가하였으 며, 사회적으로 실질적 양성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 등 성평등과 가족 다양성을 포용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고 소폭의 출산율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림 Ⅲ-9] 목일의 사회보장제도와 출산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초등교육의 변화 필요성과 쟁점", 제7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자료집, p29

# 제 3절

# 요약 및 시사점

- □ 최근 한국 가족의 변동은 가족 다양성 증가로 요약될 수 있으며 다음 4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첫째, 가족 형성 기피로 비혼 독신이나 비혼 동거가 증가하고 있음. 둘째, 가족 구성의 다양화임. 1인 가구의 급증, 무자녀 부부의 증가 등 가족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음. 셋째, 가족 관계에서 개인 가치 중심으로의 변화임. 집단으로서 가족중심주의가 사라지고 개인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넷째, 가족문화의 변화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족중심주의적 사고, 확대가족 기반 문화.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그 결과 개개인의 가족 관련 생애 경로가 다각화되어 결혼과 출산은 당연한 생애경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변화되었으며 가족관계나 가족문화 측면에서도 부모세대관계를 중심으로 하면서 확대가족에 기반하였던 문화가 해체되고 있음
- □ 최근 한국의 가족 다양성 증가는 한국 사회 저출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 가족 형성 기피, 가족 구성 다양화는 낮은 출산율의 요인이 되고 있음은 확인된 사실임
  - 가족 관계에서 개인가치 중시 역시 집단으로서 가족보다 개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함을 의미하며 결국 저출산의 요인으로 작동함. 즉 가족보다는 개인을 중심으로 사고하 기 때문에 결혼이나 자녀출산을 기피하게 됨. 또한 확대가족에 기반하거나 가부장적 가족문 화에 대한 거부는 결혼 기피로 이어지고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됨
  - 가족 다양성 증가 현상은 세대별로 볼 때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확산되고 있음
- □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가족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실정임
  - 민법상 가족의 범위, 법률혼에 기반한 가족만 인정하는 법과 제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저출산 심화에 따라 가족 다양성 논의는 비혼동거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가족 다양성 포용은 한국 사회 전반의 다양성 증가 및 다양성에 대한 포괄적 인정과 수용이라는 인식 전환의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최근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인 갑질 문화 개선 등 탈권위, 사생활이나 개인 취향에 대한 존중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가족은 가족 전체를 사생활 영역으로 간주해왔으며 가족내 개인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나 가족내에서 사생활 존중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

- 로 미흡하였음. 즉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에서도 개개인의 사적인 영역은 존중되어야 하는데 "한"가족으로 "하나"로 등치되어왔던 문제가 있음
- 또한 결혼, 출산 등 정상가족 중심 사고로 인하여 이를 벗어나는 가족에 대한 편견이 지속되고 있어 정상적이거나 전형적인 가족생애경로를 벗어날 경우 사회적 낙인으로 인하여 출산을 하지 않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 따라서 개개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도 수용되는 사회, 가족 다양성 포용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사회가 될 때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감소될 수 있을 것임
  - 이때 결혼은 반드시 법률혼이 아니어도 되며, 남녀가 법적인 혼인 여부에 무관하게 실질적 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을 의미함
- □ 해외 사례에서도 가족 다양성 수용성이 높은 국가들에서 혼인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 비혼 동거 등록제인 PACS를 시행한 후 프랑스에서 혼인이 증가하였고, 비등록 동거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아이가 있는 가구'라는 중립적 표현을 통하여 관계의 종류와 인정과 상관없이 보호를 하고 있는 스웨덴 역시 유럽에서 상대적인 고출산 국가에 해당됨. 독일은 최근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가족정책 지출을 늘이고 양성평등이나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고 출산율에 약간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음
- □ 저출산 사회로의 전환 대응을 위한 사회정책으로 다양성이 포용되는 사회를 지향하여 관련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가족과 관련하여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수용하기 위한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추진이 시급함

# Ⅳ. 저출산 사회 대응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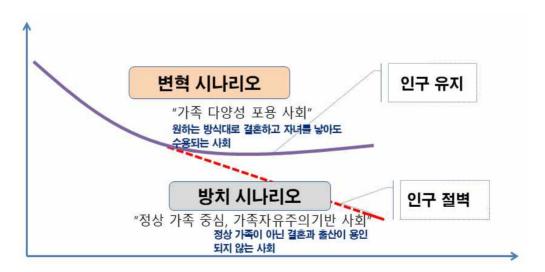
제 1절

#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방향

#### 1. 미래 사회정책의 목표

- □ 미래 사회정책의 목표는 가족 다양성 포용 사회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헌법 제36조에 의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사회
  -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개인의 가족 구성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 가족 계층에 따른 불평등이 완화되어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는 사회

#### [그림 Ⅳ-1] 미래 사회 정책 목표 - 가족 다양성 포용 사회



#### 2.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방향

#### □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방향

-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방향은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안함
- 가족 구성 관련 정책 방향은 1) 가족 구성에 대한 권리 포괄적 인정, 2)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보장임
- 가족 관계 및 문화 영역의 정책 방향은 3) 남성과 여성의 가족내 불평등 해소, 4) 가족구성원 간의 평등한 관계임
- 가족 기능 관련 정책 방향은 5) 가족의 부양과 돌봄 기능 약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임

#### 〈표 Ⅳ-1〉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방향.

영역	정책 방향	내용
	1) 가족 구성에 대한 권리 포괄적 인정	- 법률혼 이외에 가족형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수용, 실 제적 실질적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보장
가족 구성	2)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	- 가족 형태에 따라 법적·제도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 리 보장 및 사회적 편견과 인식 개선
가족 관계	3) 남성과 여성의 가족 내 불평등 해소	- 가부장적 가족문화 타파, 가족내 역할에 대한 성별 분업구조 개선
및 문화	4) 가족 구성원 간의 평등한 관계	- 부모자녀간 평등하고 민주적 관계 지향, 가족 구성원의 개인 가치 존중
가족 기능	5) 가족 다양화에 의한 가족의 경제적 부 양과 돌봄 기능 약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 가족 다양성 증가로 인하여 가족의 기본적 기능인 부양과 돌봄 기능 약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 (정책 방향 1) 가족 구성에 대한 권리 포괄적 인정

- 가족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법률혼과 혈연 위주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함에 따라 많은 가족과 가족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초래함. 부양, 상속, 복지 등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제도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될 위험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가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므로 각종 법률에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거나 재구성하고, 가족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 있음
- 따라서 법률혼 이외 실제로 가족을 이루어 사는 둘 이상의 구성원에 대한 재산권 보호

및 아동 보호가 필요함. 재산권은 법률의 보호를 필요로 하므로 법률혼 밖의 가족은 어려움이 있음. 미혼모부에 의한 출산 등을 포함하여 법률혼 외 출생 자녀의 성장 지원은 출산율제고 차원이 아니라 출생하는 모든 아동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함

#### □ (정책 방향 2)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

- 증가하는 1인가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구성의 가족은 이미 현실임..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부부중심 핵가족을 이념형으로 하는 모든 가족정책은 정상/비정상 가족으로 나누고 가족정책의 왜곡을 초래함.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다양한 가족구성에 대응하여 각 가족에게 필요한 제도와 정책 지원이 요구됨
- 특히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은 가족의 구성원인 개인과 아동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게 되므로 개인의 존엄과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여야 함
- 또한 가족구성 다양성과 관련한 부분으로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부족하여 초혼핵가족 이외 의 가족은 비정상가족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기초적 단계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은 중요함

### □ (정책 방향 3) 남성과 여성의 가족 내 불평등 해소

- 가족 관련 현대적 인권원칙에는 평등과 반차별의 원칙이 포함되며, 이에는 가족형태에 따른 반차별,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반차별, 가족 관련 혜택의 반차별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성애 중심의 혼인의 가부장적 기초와 젠더화된 노동분업, 효도와 같은 요소는 많은 여성이 결혼을 거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므로시정되어야 할 부분임
-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사회적으로 전통적 성역할 구도가 해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내 성별 불평등 개선은 미흡함. 이는 남녀 모두에게 가족이 부양과 돌봄, 정서 등 순기능적 측면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하여 혼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규범적인 가족 구성을 꺼리게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남녀의 가족내 불평등 해소는 무엇보다 청년 및 미래세대로하여금 가족 구성을 보다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 (정책 방향 4) 가족구성원 간의 평등한 관계

○ 가족 내의 가부장적 위계구조는 가족 구성원 중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과 아동을 차별하고 억압하게 됨. 가족 구성원 간에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는, 가족의 구성과 생애주기가 다양해지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로서의 오늘날 가족의 의미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성평등, 개인과 아동의 권리보장 차원에서도 필요함

- 또한 가족구성원 간의 평등한 관계에는 남녀간, 세대간, 가족구성원 간의 평등하고 민주적 관계도 포함되지만 각자의 고유한 개인적 영역 또는 가족구성원의 개인성에 대한 상호존중 과 배려도 포함함. 가족이라는 단위로 묶이면서 쉽게 매몰 또는 희생되어버리고 마는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가족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개인성에 대한 존중 및 지지가 필요함
- □ (정책 방향 5) 가족 다양화에 의한 가족의 경제적 부양과 돌봄 기능 약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 1인가구가 가구 구성의 주된 유형으로 증가하는 등 가족의 규모 축소, 가족 구성이 다양화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가속화될 전망임. 따라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부양과 돌봄 기능을 가족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전제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3.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진단

- □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의 필요성
  - 저출산 사회 전환 대응을 위하여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하여 95.5%가 동의함

#### □ 정책 방향의 적절성 정도

-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의 적절함 정도(4점척도)에 대해서는 모든 과제가 3점 이상으로 대부 분 적절하다고 진단함
- 영역별로 가족형태에 따라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보장이 가장 높고 가족구성에 대한 권리 인정이 높게 나타남
-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에서 가족 형성 방식, 가족형태 관련 수용성 제고가 상대적으로 더 적절한 정책과제로 간주함을 의미

# [그림 N-2]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방향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진단



# 제 2절

#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과제

- 1.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5개 영역별 추진 과제
  - □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과제는 다음 [그림 IV-3]과 같음

# [그림 N-3]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과제

가족 구성	<ul><li>□ 가족 구성에 대한 권리</li><li>포괄적 인정</li></ul>	<ul> <li>법률혼이외의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하도록 법제도 개선</li> <li>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대한 조항 폐지</li> <li>가족 변동에 따른 친자법 개정 방향 검토 및 개정안 마련</li> </ul>
	②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보장	가족형태에 따른 낙인이 없도록 관련 법안 개선     가족형태별 지원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대응     가족형태에 따른 자녀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해소
가족 관계 및	③ 남성과 여성의 가족 내 불평등 해소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남아 있는 부계혈연기반 법제도 개선     성평등한 가족의례(명절문화, 장례, 제례 등)를 위한 제도 개선     남녀 동등한 돌봄에 대한 권리 및 기회 보장 방안 마련     가부장적 가족 호칭 개선 등 성평등한 가족 문화 조성
문화	④ 가족내 개인 존중	<ul> <li>민주적인 부모 자녀 관계 형성 및 확산 방안 마련</li> <li>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가족문화 개선 방안 마련</li> <li>개인 가치 존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등 인식 개선</li> </ul>
가족기능	⑤ 가족의 경제적 부양과 돌봄 기능 지원	가족 형태별 소득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     부모 부양 기능 약화에 따른 노인 소득 보장 제고     가족 돌봄의 사회화 확대     Al 등 과학 기술 활용 돌봄 지원 방안 마련

# □ (정책 방향 1) 가족 구성에 대한 권리 포괄적 인정

- 정책과제 1) 법률혼 이외의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하도록 법제도 개선
  - 현행 가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령, 건강가정기본법 및 개별 법률 개정, 생활동반자법 등 새로운 법제 도입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 구성의 권리 보장 필요
- 정책과제 2)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대한 조항 폐지
  - 민법은 가족을 법률혼. 혈연 위주로 정의하고 있어 가족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혼인이 나 혈연과 관련된 범주는 지나치게 넓어 가족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는 괴리가 있고 일반

적인 가족의 범위를 규정할 만한 실익도 없어 가족의 정의 삭제 필요

- 정책과제 3) 가족 변동에 따른 친자법 개정 방향 검토 및 개정안 마련
  - 법률혼에 기초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를 구별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친자법 은 태어난 아동을 가족형태에 근거하여 차별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함
- 친자법은 혈연에 기반하여 자녀관계를 규정하고 있어 자녀의 복리, 아동의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음

#### □ (정책 방향 2)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

- 정책과제 1) 가족형태에 따른 낙인이 없도록 관련 법안 개선
  - 가족정책을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가족형태에 따른 구분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은 오히려 가족 형태에 따른 구분을 더욱 강화하게 되고 포용성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통합적인 가족정책 안에서 모든 형태의 가족이 정책적 혜택을 조건에 따라받는 구조가 요구됨. 개별 가족 유형별로 지원책을 설정하고 있는 관련 법안들은 가족형태에 대한 낙인을 초래하게 됨. 가족 형태별 접근에서 가족 다양화 현상에 대한 포괄적 수용의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 정책과제 2) 가족형태에 따른 자녀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해소
  - 취약계층, 한부모, 재혼, 다문화, 입양, 장애인, 맞벌이 가족 등 다양한 가족 내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부정적 인식과 소외는 해당 가족들이 후속 자녀출산을 거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가족유형에 관계없이 그들이 속한 가족 유형에서 부모자녀관계를 잘 유지하고 건강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필요
- 정책과제 3) 가족형태별 지원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대응
  - 가족 형태별 지원정책 사각지대 발굴은, 가족 형태에 따른 정책적 소외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일 것임

#### □ (정책 방향 3) 남성과 여성의 가족 내 불평등 해소

- 정책과제 1)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남아 있는 부계혈연기반 법제도 개선
  - 호주제 폐지 이후 실질적인 부계혈연중심의 가족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적 작업이 신속하게 추가되어야 함. 예를 들어, 가족구성원의 성씨 사용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 방안 마련. 자녀의 성(姓)을 부(父)의 성(姓)을 따를 것인지 모(母)의 성(姓)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의 시점을 혼인신고가 아닌 자녀의 출생신고 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당분간 가족 내 모의 성을 따르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 모의

성을 따르는 것을 기본값으로 하고, 부의 성을 따르고자 할 경우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도 방법임.

- 또한 부계혈연기반 법제도의 경우 단순한 한 가족내의 문제가 아니라 문중, 종친회 등 공식적인 법제도는 아니나 이미 사회문화적인 물적기반 또는 관계망을 갖고 움직이는 조직에 대한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함
- 정책과제 2) 성평등한 가족의례(명절문화, 장례, 제례 등)를 위한 제도 개선
- 가부장제에 기반한 각종 의례가 성차별적이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 필요. 개별 가족들의 자율적인 영역, 관습적인 영역으로 치부하기에는 청년세대, 여성들의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음. 다만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문화 및 인식적인 영역의 정책과제를 구분하여추진 필요.
- 정책과제 3) 가부장적 가족 호칭 개선 등 성평등한 가족 문화 조성
- 호칭과 언어습관은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가치관 변화에 대비하여 지체된 영역이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 정책과제 4) 남녀 동등한 돌봄에 대한 권리 및 기회 보장 방안 마련
  - 남녀동등한 돌봄에 대한 권리 및 기회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함. 현재 돌봄과 관련한 제도들을 '모성보호'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는 육아휴직 등과 같은 돌봄의 일차적 책임자는 여성이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임. 현재 돌봄과 관련한 제도에 있어 모든 부분에서 동등하게, 여성 우선이 아니라 남녀 모두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

#### □ (정책 방향 4) 가족구성원 간의 평등한 관계

- 정책과제 1) 민주적인 부모 자녀 관계 형성 및 확산 방안 마련
  - 민주적인 부모 자녀 관계 형성은 자녀를 부모에 종속된 존재가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함. 민주적인 부모자녀관계 형성 및 확산 방안에 대한 정책은 저출산 문제 중 하나가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과 부모됨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크지 않은 이유를 고려할 때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만족스럽게 유지됨은 부모됨의 선택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정책과제 2) 개인 가치 존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등 인식 개선
  - 가족이 아닌 타인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친밀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존중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의 민주시민교육 등을 통하여 개인 가치를 존중하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함
- 정책과제 3)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가족문화 개선 방안 마련

-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가족 문화는 "가족 제도/ 제도혼"으로의 진입 자체를 거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어 개선되어야 함
- □ (정책 방향 5) 가족 다양화에 의한 가족의 경제적 부양과 돌봄 기능 약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 정책과제 1) 가족형태에 따른 소득 불평등 실태 점검 및 해소방안 마련
  - 가족의 형태가 가족 계층 및 불평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를 우선 규명하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규명에 따라 불평등을 해소하기 원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단,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 등 기존의 가족정책에서 다양한 가족으로 분류되어 있는 가족의 정책수요 및 지원이 전통적인 형태를 벗어난 것이 문제인지, 이들의 가구소득이 낮은 빈곤의문제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정책과제 2) 가족의 부모 부양 기능 약화 대응을 위한 공적 노인 소득 보장 제고
    - 가족부양은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노인인 부모들의 자기돌봄 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득보장은 부모들이 갖는 자녀에게 부양기대나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를 통해서 부모됨의 선택을 보다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임
  - 정책과제 3) 노인 돌봄의 사회화 확대
    - 노인 부양과 돌봄은 가족의 전 생애에 걸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노인 돌봄의 사회화는 젠더화된 가족 내 돌봄 문제의 해소, 가족 변화에 따른 가족 돌봄이 어려운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
  - 정책과제 4) 자녀 돌봄의 사회화 확대
  - 자녀들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돌봄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만큼 자녀돌봄 사회화 확대 및 질적 제고를 하는 방안 정책화 필요
  - 정책과제 5) AI 기술을 활용한 돌봄 지원 방안 마련
    - 인구감소로 인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노인돌봄과 자녀돌봄 의 사회화에 "AI기술"을 접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즉 돌봄을 가족과 개인이 아닌 사회적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 중 하나로 AI 기술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2.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추진 과제에 대한 전문가 진단

- □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과제의 적절성 정도에 대한 전문가 진단 결과는 다음 〈표 IV-2〉와 같음
  - 모든 과제가 3점 이상으로 대부분 적절함
  - 적절성 정도가 높은 과제는 "부계 혈연 기반 법제도 개선", "남녀 동등한 돌봄 권리기회보장",

# "법률혼 이외 가족 인정" 등임

○ 적절성 정도가 낮은 과제는 "가족형태별 지원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대응"으로 동 과제는 가족형태를 오히려 부각할 가능성이 있고 역으로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함. "AI 기술 활용 돌봄지원방안"도 적절성 정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임

# 〈표 Ⅳ-2〉 기족 다양성 포용 정책 추진과제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진단.

	법률혼 이외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하도록 법제도 개선	3.77
가족구성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인정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대한 조항 폐지	3.41
	가족변동에 따른 친자법개정 방향 검토 및 개정안 마련	3.64
	가족형태에 따른 낙인 없도록 관련법 개선	3.36
가족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	가족형태에 따른 자녀사회적 차별 및 편견해소	3.68
122 132 2 1 - 3	가족형태별 지원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대응	3.09
	부계혈연기반법제도 개선	3.86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한 가족의례를 위한 제도 개선	3.36
가족내 불평등 해소	가부장적 가족 호칭 개선 등 성평등 가족문화 조성	3.36
	남녀 동등한 돌봄에 대한 권리 및 기회보장 방안 마련	3.86
	민주적인 부모자녀관계 형성 및 확산방안 마련	3.45
가족구성원 간의 평등한 관계	개인가치 존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등 인식 개선	3.32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가족문화 개선 방안 마련	3.36
	가족형태에 따른 소득불평등 해소방안 마련	3.45
_,,	부모부양기능약화 대응을 위한 공적 노인소득 보장 제고	3.45
경제적 부양과 돌봄 기능 약화 대응	노인돌봄 사회화 확대	3.73
	자녀돌봄 사회화 확대	3.55
	AI 기술을 활용한 돌봄지원방안 마련	3.05

# 제 3절

#### 추지방안

### 1. 추진 과제 로드맵

- 가. 추진 과제의 우선 순위
- □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 추진 과제를 필요성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 단기추진과제와 장기추 진과제로 구분하였음
- □ 5개 정책 영역별로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면 다음 〈표 IV-3〉과 같음
  - (정책 방향 1) 가족구성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인정에서는 법률혼 이외의 가족을 인정하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은 이미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책대안으로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함. 그러나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대한 조항 폐지, 친자법 개정 과제는 장기적으로 대안 마련 및 사회적 합의 도출 등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임
  - (정책 방향 2) 가족형태에 따라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보장 영역에서는 가족형태별 지원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대응, 가족형태에 따른 자녀 사회적 차별 및 편견해소 과제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이 없도록 관련 법을 개선하여야 할 것임
  - (정책 방향 3) 남성과 여성의 가족내 불평등 해소 영역의 경우 남녀 동등한 돌봄권 및 기회 보장은 제도 개선 등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가족문화 구조 전반에 걸친 인식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부계혈연기반 법제도 개선이나 성평등한 가족의례, 성평등 가족문화 등의 추진 과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로 장기적이 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함
  - (정책 방향 4) 가족구성원 간의 평등한 관계에서는 민주적인 부모자녀관계 형성 및 확산 방안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개인가치 존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등 인식 개선이나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가족문화 개선 방안은 인식 관련 변화가 필요하여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장기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방향 5) 경제적 부양과 돌봄 기능 약화에 대한 대응 과제는 5개 과제 중 AI 기술을 활용한 돌봄지원방안마련 과제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과제임. AI 기술을 활용한 돌봄 지원 방안 마련 과제는 관련 기술 발달과 상용화 등이 요구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표 Ⅳ-3〉 추진 과제 로드맵

구분	단기	장기
가족구성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인정	• 법률혼 이외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하도록 법 제도 개선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대한 조항 폐지     가족변동에 따른 친자법개정 방향 검토 및 개정안 마련
가족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	가족형태별 지원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대응     가족형태에 따른 자녀 사회적 차별 및 편견 해소	가족형태에 따른 낙인없도록 관련법 개선     가족형태에 따른 자녀 사회적 차별 및 편견해소
남성과 여성의 가족내 불평등 해소	● 남녀 동등한 돌봄에 대한 권리 및 기회보장 방 안 마련	<ul> <li>◆ 부계혈연기반법제도 개선</li> <li>◆ 성평등한 가족의례를 위한 제도 개선</li> <li>◆ 가부장적 가족호칭개선 등 성평등가족문화 조성</li> </ul>
가족구성원 간의 평등한 관계	• 민주적인 부모자녀관계 형성 및 확산방안 마련	● 개인가치 존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등 인식 개선 ●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가족문화 개선 방안 마련
경제적 부양과 돌봄 기능 약화 대응	가족형태에 따른 소득불평등 해소방안 마련     부모부양기능약화대응을 위한 공적 노인소득 보장 제고     노인돌봄 사회화 확대     자녀돌봄 사회화 확대	● AI 기술을 활용한 돌봄지원방안 마련

# 나. 추진 과제의 실현 가능성

□ 추진 과제에 대하여 실현 가능성과 혁신성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IV-4〉와 같음

#### □ 혁신적 과제로 구분한 사유

- 한국 사회는 혈연 중심 가족 문화가 뿌리깊으며, 특히 혈연중에서도 부계 중심인 가부장 문화구조가 가족문화 전반에 자리하고 있음
-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대한 조항 폐지, 가족 변동에 따른 친자법 개정 방향 검토 및 개정안 마련 과제의 경우 혈연을 중심으로 한 부모 자녀관계 및 가족의 범위 개념에 있어서 근본적 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혁신적인 대안임
- 또한 법률혼 이외의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하도록 법제도 개선 과제 역시 비혼 동거 가족을 주요 이슈로 하고 있으나 향후 공동체 가족이나 동성애 가족에 대한 포함 여부 문제로 쟁점화 가능
- 남성과 여성의 가족내 불평등 해소는 위한 과제에서 부계혈연기반 법제도 개선, 성평등한 가족의례 관련, 성평등 가족문화 조성 등의 과제 또한 가부장적 가족 문화에 대한 근본적이 고 혁신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는 과제들임

○ AI 기술을 활용한 돌봄 지원 방안 마련 과제의 경우도 혁신적인 기술 발달을 전제로 가능한 과제임

#### 〈표 Ⅳ -4〉 추진과제의 실현가능성

구분	실현가능한 대안	혁신적인 대안
가족구성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인정		<ul> <li>법률혼 이외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하도록 법제도 개선</li> <li>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대한 조항 폐지</li> <li>가족변동에 따른 친자법개정 방향 검토 및 개정 안 마련</li> </ul>
가족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	가족형태에 따른 낙인없도록 관련법 개선     가족형태에 따른 자녀 사회적 차별 및 편견해소     가족형태별 지원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대응	
남성과 여성의 가족내 불평등 해소	● 남녀 동등한 돌봄에 대한 권리 및 기회보장 방안 마련	<ul> <li>◆ 부계혈연기반 법제도 개선</li> <li>◆ 성평등한 가족의례를 위한 제도 개선</li> <li>◆ 가부장적 가족호칭개선 등 성평등가족문화 조성</li> </ul>
가족구성원 간의 평등한 관계	<ul> <li>민주적인 부모자녀관계 형성 및 확산방안 마련</li> <li>개인가치 존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등 인식 개선</li> <li>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가족문화 개선 방안 마련</li> </ul>	
경제적 부양과 돌봄 기능 약화 대응	<ul> <li>가족형태에 따른 소득불평등 해소방안 마련</li> <li>부모부양기능약화대응을 위한 공적 노인소득보 장제고</li> <li>노인돌봄 사회화 확대</li> <li>자녀돌봄 사회화 확대</li> </ul>	• AI 기술을 활용한 돌봄지원방안 마련

#### 2. 추진 수단

- □ 위에서 제시한 추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법제도, 사회문화교육, 기술투자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 〈표 IV-5〉와 같음
- □ 법이나 제도 개선은 법안 개정 및 신규 법안 마련, 관련 사회정책 재정비 방안이 있음
  - 관련법 개정은 민법 개정, 그 외 여타 관련법의 부계혈연에 기반한 법안 내용을 발굴하고 개정하는 것임
  - 관련 사회정책 재정비는 사회 정책 전반에 걸쳐 정상 가족에 기반한 내용은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하는 것과 AI 등 신기술 발달에 따라 돌봄 서비스 제도를 재정비하는 방안 등이 있음

- □ 사회문화교육은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캠페인, 차별 모니터링 등의 수단이 있음
-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이 가능함
- 홍보 및 캠페인은 미디어나 매체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가족 다양성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나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임
- 차별 모니터링은 가족 다양성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모니터 링하여 개선하는 것임

#### 〈표 Ⅳ-5〉 추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

법제도 개선	<ul> <li>● 관련 법안 개정         <ul> <li>- 민법, 그 외 관련법안의 부졔혈연기반 법안 내용 발굴 및 개정</li> </ul> </li> <li>● 신규 법안 마련         <ul> <li>- 법률혼 이외 가족 인정 별도 법안 마련 검토</li> </ul> </li> <li>● 제도 정비         <ul> <li>- 정상 가족 기반 사회 정책 재정비</li> <li>- AI기반 돌봄서비스 지원 관련 제도 설계</li> </ul> </li> </ul>
사회문화 교육	<ul> <li>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li> <li>인식 개선 교욱</li> <li>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li> <li>미디어 및 매체 활용 홍보 및 캠페인</li> <li>차별 관련 모니터링</li> </ul>
기술 투자	• 관련 기술 개발 및 상용화 - 돌봄 관련 기술(예: 일본의 돌봄 로봇 등)

# 3. 장애 요인 및 대응 방안

#### □ 장애 요인

- 가족 가치관 관련 반발 예상
  - 한국 사회는 혈연 중심 가족 문화가 뿌리깊으며, 부계 중심인 가부장 문화구조가 가족문화 전반에 자리하고 있음. 이에 부계혈연 기반 가족 가치관을 고수하는 집단의 반발 예상
- 법률혼 이외의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등 가족 구성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정책을 둘러싼 집단 간 갈등
  - 공동체 가족이나 동성 가족에 대한 인정 관련 찬반 및 갈등 예상
- 성평등한 가족문화 관련 젠더 갈등

-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 격차는 심각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갈등 예상

# □ 대응 방안

- 가치관 및 신념에 따른 집단 간 갈등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도출에 어려움 예상
- 지속적인 설득과 상호 소통 등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활용

# 참고문헌

- 계봉오, 김영미(2016). 『저출산에 대한 문화적 접근: 성평등주의와 출산의 관계』. 세종: 한국보건 사회연구워.
- 권태환(1983), "현대 인구학의 성격과 방법의 문제". 서울대 사회학연구회(편). 『전통과 변화』. 서울: 법문사
- 곽윤철(2017), 경제적 요인이 가구형성에 미치는 영향; 상대임금과 주거비 부담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박사학위논문.
- 구성열(1996). 『인구경제론』. 박영사.
- 국가기록원. (2017). '인구정책 어제와 오늘'.
  - http://theme.archives.go.kr/next/populationPolicy/outline.do에서 2019.11.26. 인출.
- 김민영, 황진영(2016). "주택가격과 출산의 시기와 수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실증분석". 보건사회연구. 36(1):118-142.
- 박경숙(2017). 『인구학방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박복순, 박선영, 김영란, 정다은, 류민희(2019). 『가족 다양성 포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박승희, 김사현(2008). 『여성노동자의 저출산 원인과 여성친화적 노동시장 정책』. 서울: 뉴패러다임센터.
- 배호중(2018). "주거비 부담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2000년 이후 초혼가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배호중, 한창근(2016). "신혼부부의 주택자산과 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3):204-238.
- 성낙일, 박선권(2012). "우리나라 지역별 자녀 양육환경과 출산율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인구학. 35(2):73-101.
- 안종범, 우석진, 정지운, 김미진, 김하나(2010). 『저출산의 원인분석을 통한 저출산대책 개선과 여성인적자원 활용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이민아(2013). "계획적 무자녀 가족". 한국사회학. 47(2):143-176.
- 이삼식, 이지혜(2014).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종하, 황진영(2018).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예산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8(3):555-579.

- 이철희(2012).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한국인구학. 35(3);117-144
- 이철희 (2018).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2000년~2016년 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경제학연구, 66(3):5-42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2019.2).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 전광희(1997). "출산력 변화의 메카니즘".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일신사. pp.57-98..
- 전광희 외(2005).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적정인구추계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인구학회.
- 전광희(2006). "인구학적 관점에서 본 적정인구의 추계". 한국인구학. 29(1):209-239
- 전광희(2015), "적정인구", 한국인구학회(편), 『한국인구대사전』 전면개정판 통계청. pp.714-718,
- 주재선, 김태홍, 김영란, 한진영(2018). 2018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천현숙, 이길제, 김준형, 윤창원(2016), 「주택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한국보 건사회연구원·국토연구원
- 최샛별, 신아름, 최유정(2015). "한국의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대중적 가족 개념에 대한 성별 및 연령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 가족과 문화. 27(2):180-211.
- Barro, Robert J. and Xavier I. Sala-i-Martin (2004). *Economic Growth.*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Bloom, David E. and Jeffrey Williamson (1998). "Demographic Transitions and Economic Miracles in Emerging Asia". *World Bank Economic Review.* 12(3):419-55.
- Bongaarts, J., (1978). A Framework for Analyzing the Proximate Determinants of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05-132.
- Bongaarts and Feeney(1998). "On the Quantum and Tempo of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4, No. 2 (Jun., 1998):271-291.
- Esping Andersen, G., & Billari, F. C. (2015). "R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 1-31.
- Hobcraft, J., & Little, R., (1984). Erratum: Fertility Exposure Analysis: A New Method for Assessing the Contribution of Proximate Determinants to Fertility Differentials. *Population Studies*. 38:21-45, 191
- Lind, G. (2008). *Common law marriage: A legal institution for cohabi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Ministry of Justice(1969), Abstract of Protocol on Justice Department Matters 4.
Sauvy, Alfred. (1963). <i>Malthus et les deux Marx.</i> Paris: Denoël.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인구동향조사
, 인구총조사
, 장래인구추계
, 주민등록인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통계청(2019). 「2018년 출생통계(확정)」,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에서
2020.01.21. 인출.
Lag (1973:651) om ogifta samboendes gemensamma bostad
https://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ing/lag
-1973651-om-ogifta-samboendes-gemensamma_sfs-1973-651, 검색일: 2019.10.23
Sambolag (2003:376)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lagar/dokument/svensk-forfattningssaml
ng/sambolag-2003376_sfs-2003-376_ 검색익: 2019 10 23



# 보론. 적정인구 개념과 가족 다양화 시대의 정책적 함의

# 보론, 적정인구 개념과 가족 다양화 시대의 정책적 함의22)

#### 제 1절

#### 적정인구의 개념과 유형

#### 1. 적정인구 개념

- □ 적정인구(適正人□: optimum population)는 어떤 기준에 따라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구를 의미함(권태환, 1983; 구성열, 1996; 전광희, 2006에서 재인용)
  - 한 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이상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를 의미함.(권태환,1983; 구성 열,1996, 전광희, 2006 재인용)
  - 극대인구(maximum population)와 극소인구(minimum population)의 사이에 존재
  - 과잉인구(overpopulation)와 과소인구(underpopulation)를 판별하는 이론적 기준
  - 인구의 적정상태는 일반적으로 총인구의 적정규모나 적정성장률을 추계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특정 연령집단의 적정규모나 적정 성장률에 한하여 추계하기도 함(Bloom & Williamson, 1998; 전광희, 2006에서 재인용)

#### 2. 적정인구의 유형

- 가. 적정인구 유형
- □ 인구변수의 외생성에 따라서 외생모형과 내생적 모형으로 구분됨
  - 인구변수는 오랫동안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로 간주되어 경제체제 밖에서 결정되는

<sup>22)</sup> 집필자: 객원연구원 전광희 충남대 교수, 전광희(2015), "적정인구", pp. 714-718, 한국인구학회(편), 『한국인구대사전』 전면개정판 통계청에서 발췌 요약한 것임

주어진 변수로 모형화되어 왔음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발전론에서 인구변수는 경제체제의 영향을 받는 내생변수 (endogenous variable)로 모형화되기 시작함
- □ 인구변수의 동태적 성격에 따라서 적정인구규모를 산출하는 정태적 모형과 적정인구성장률을 산출하는 동태적 모형으로 구분됨
  - 정태적 모형
    - 적정인구수준이 일정 수준으로 정해져있다는 가정하에 특정 시점에서의 적정인구 규모를 산출
  - 동태적 모형
    - 적정인구수준이 경제체제 내에서 결정된다는 내생성을 지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한 모형을 통하여 적정인구성장률을 산출
    - 인구 내생적 경제성장론에서는 세대 간 연결되는 효용함수를 가정하여 인구성장과 경제발 전이 상호작용하면서 상호 합치되는 동태적으로 최적화된 인구성장경로를 구함
- □ 사회의 목표를 반영하는 '적정'의 개념에 따라서 모형이 달라짐(전광희, 2006)
  - 생산량의 극대화가 가장 기본적인 적정 기준이었지만, 그 밖에 다른 목적들이 고려될 수 있음
    - 복지, 소득성장, 고용, 국력, 군사력, 평균수명을 고려한 적정인구모형이 등장함.
  - 도덕철학이나 사회정의론의 사회과학적 규범이나 가치와 밀접한 측면이 있음

#### 나. 인구변수의 정태적 분석

- □ 적정 기준을 극대화하는 적정인구규모 산출
  - O Edwin Cannan의 적정인구규모(Sauvy, 1963: 57)
    - 적정인구논의의 출발점이며, 적정기준으로 1인당 생산/소득을 상정함.
    - 인구수준은 곧 노동력의 수준으로 간주되며, 다른 조건이 불변할 때 1인당 생산/소득을 극대화하는 인구규모를 의미함
    -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이 주요 가정으로 기능함
  - O Alfred Sauvy의 부유화의 적정인구(the optimum of affluence)(Sauvy, 1963: 51, 59-60).
    - 한계생산력(marginal productivity)이 극대화될 떄의 인구를 의미
    - 인구가 성장하면서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생산량이 가장 클 때의 인구

- 인구성장이 가장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규모를 의미함, 해당 적정인구 수준 달성 후 태어나는 인구가 기여하는 생산력은 점차 감소하기 때문임
- Alfred Sauvy의 국력의 적정인구(l'optimum de puissance)(Sauvy, 1963:67-68)
  - 첫째, 국력의 기반이 잉여생산량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잉여생산량의 극대화를 만족하는 인구 수준을 의미하며, 잉여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에서 생명유 지에 필요한 최소 생존을 위한 생산량을 제외한 것을 의미함
  - 둘째, 국력을 군사력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군인 부양 및 군비 사용에 필요한 추가적인 생산량이 필요하므로 적정 인구 수준은 첫 번째 적정인구보다 더 증가함

#### 다. 인구변수의 동태적 분석

#### □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적정인구성장률(인구 내생적 경제발전론)

- Robert Barro와 Gary S. Becker의 모형 : 세대 고리 모형
  - 개인의 선택에 의한 출생이수를 횡단 및 시계열적으로 확장하여 거시적으로 합산하면, 이는 해당 인구의 최적 성장 경로에 상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최초의 논의인 Edwin Cannan의 적정 인구 규모는 외생적이고, 노동력의 공급 요인으로만 접근한 것에 비해, 인구 내생적 경제발전론은 가계의 의사결정이 출생아 수를 결정한다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음(전광희, 2015)
  - 세대 간 이전을 고려한 출산수준의 결정은 세대 간 이전계수(intergenerational transfer quotient)<sup>23)</sup>를 극소화한다고 가정, 이러한 의사결정은 전세대에 걸쳐서 일어나므로 초세대, 동태적 최적화(超世代, 動態的 最適化: trans-generational, dynamic optimization)의 문제가 됨
  - 이는 세대 간 비율의 문제로 환원되며, 이는 세대 간 비율은 순재생산율(NRR or Net Reproduction Rate)임. 이는 세대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함
  - 세대 간 수령하고 제공받는 서비스 및 지원금이 동일하고, 순재생산율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통하여 논의를 단순화하여 순재생산율을 구할 수 있음
  - 순재생산율은 자식 세대에 대한 지원액(분모) 대비 부모세대에 대한 지원액(분자)으로 나타 나며, 자식 세대에 대한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진다면, 순재생산율은 줄어들게 되어 인구가 감소하게 됨. 만약 전후 세대에 대한 지원액이 동일하다면 순재생산율은 1이 되고.

<sup>23)</sup> 전후세대에게 제공한 서비스 및 지원금(비용)을 전후세대로부터 수령한 서비스 및 지원금(이익)으로 나눈 값임.

#### 이는 정지인구를 의미

#### 라. 한국의 적정합계출산율 분석

- □ 2005년의 분석결과(전광희 외. 2005)
  - 인구부양비(demographic dependency) 최소화 모형 : 2.1~2.2명
    - 2015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08명 수준에서 1.4명 정도로 끌어올려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2.1~2.2명 수준으로 안정화해야 함
  - 경제적 부양비(economic dependency) 최소화 모형 : 1.8~1.9명(현 소비비중 변화시)
    - '유년층소비:노인층소비'를 현재의 3:1의 수준에서 2:1로 변경해야 함
    - 2015년부터 합계출산율을 1.08명 수준에서 1.6명 정도로 끌어올려야 함
    - 2050년을 목표로, '유년층소비:노인층소비'를 1.5 : 1 정도로 개선하여 1.8~1.9명 <del>수준</del>으로 합계출산율을 올려야 함
    - 출생 촉진주의 기반의 인구정책과 가족 정책 실천 요구

#### □ 2020년의 분석결과

- 인구부양비(demographic dependency) 최소화 모형: 2.6~2.7명
  - 2070년은 인구학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합계출산율이 2.2명이고 그에 해당하는 적정 인구 성장률은 -0.32%임
  - 2120년, 2170년, 2220년, 2270년, 2320년의 5개 시점에서 인구학적 총부양비가 최소화되는 합계출산율은 2.6~2.7명, 적정 인구성장률은 -0.54%~0.75%임.
  - 현재 최저수준인 합계출산율인 0.9명, 재생산 연령대(15-49세)의 여성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대체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목표로 하면 합계출산율이 2.6~2.7명 정도를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하는데 시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임
- 경제적 부양비(economic dependency) 최소화 모형 : 1.4~1.6명(현 소비비중 유지시)
  - 유년층소비:노인층소비가 3 : 1일 경우, 2070년에는 경제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적정 합계출산율(*TFR*<sup>opt</sup>)은 1.0명, 적정 인구성장률(*r*<sup>opt</sup>)은 -2.0%임
  - 2120년, 2170년, 2220년, 2270년, 2320년의 5개 시점에서는 경제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적정 합계출산율은 1.4∼1.6명이고, 적정 인구성장률(r<sup>opt</sup>)은 -0.9∼-1.3%임
  - 만약 유년층과 노인층의 상대적 소비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부모세대에게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면, 경제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적정합계출산율과 적정인구성장률은 증가

- 중장기적으로 제로성장을 만족하는 대체출산율의 수준은 2.5~2.7명에 근접

#### 제2절

## 적정인구 논의의 한계

#### □ 적정인구의 달성 불가능함.

- 2020년에 산출한 자료를 보듯이 1.0명 이하가 된 지금에 이르러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임. 많게는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임
  - 대체수준의 적정합계출산율은 산출가능하지만 실현이 불가능한 수준임
  - 출산을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간주한다면 국가가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함.
- 적정인구 기준이 모호함
- 또한 "대체수준"이라는 적정에 대한 기준 설정은 기계적임
- 현재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고 있지는 않음

#### □ 적정인구 논의의 전환?

○ 적정인구에 대한 논의는 "적정인구가 어느 규모인가?"를 논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이 특정 수준의 인구 규모를 맞이 했을 때 어떠한 정책이 바람직한가?"를 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임

#### 제3절

#### 적정인구 논의의 가족 다양성 포용 정책에 대한 함의

#### □ 유럽사례로부터의 함의

- 유럽에서의 인구정책의 목적은 역사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인구, 경제, 사회의 상황에 따라 인구정책의 목표는 차이가 존재하였음
  - 어떤 시대에는 인구 증가를 어떤 시대에는 인구 감소를 정책 목표로 하는 인구이념 또는 인구 사상이 표출되고, 그것을 집행하는 정책 수단들이 개발되었음
  - 일반적으로 유럽 인구정책의 변천을 살펴본다면, 역사적으로 훨씬 더 가시적인 인구정책의 목표는 출산 억제라기보다도 출산장려였음이 적절함
- 1970년대 이후 저출산정책 기조는 가족의 다양화 인정 및 육아친화적 사회로의 전환임
  - 1970년대를 전후하여 서유럽 국가의 가족 정책은 대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음.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된 저출산이 대체수준을 훨씬 밑도는 정도로 진전되면서, 종래의 가족 정책은 근본적 수정이 필요하게 된 것임. 그 결과, 유럽의 개별 국가들은 가족의 다양화를 인정하고, 안심하고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방식으로 출산과 육아를 방해하는 사회적/경제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였음
  - 이 때문에 유럽의 많은 선진국 정부는 출산을 전후한 계속 고용, 자녀의 부양, 자녀 교육 비용 경감 등에 의하여 "낳는 자유"와 "키우는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육/교육환경의 정비에 관심을 보임
  - 더불어 사회와 가족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의 평등화를 실현하고, 일과 생활의 양립 (work-life balance)을 추진하는 제반 시책, 특히 유급 육아 휴가와 공보육 서비스의 확장에 정책적 우선 목표를 두도록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가족수당, 출산 수당, 유급 육아 휴가제도, 보육 시설의 확충, 세제개혁 등 직접 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옴
  - 이러한 정책은 자녀 부양 부담의 형평화, 가족 복지, 남녀평등과 더불어 가족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광범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 한국사회로의 적용

- 한국 사회 역시 유럽과 비슷한 맥락으로 인구가 증감하였으며, 국가정책의 기조 역시 변화하 였음
  - 전후 베이비붐 이후로의 인구급증과 이에 대응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으로

인구가 감소한 가운데, 국가적 경제적 위기 및 개인의 가치관 변화로 빠른 속도로 출산이 감소하고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음

- 변화의 속도가 빠른데 이를 완만하게 할 수 있는 국가정책은 출산 자체에만 집중되어있고, 사회 전반적인 변화는 도외시하였음
- 유럽의 사례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육아친화적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가족의 다양화, 양성평등, 일-생활의 양립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12-02

# 저출산 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 다양성 포용

발 행 2020년 2월

발 행 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909호

전 화 044) 211-1000 홈 페 이 지 www.nrc.re.kr

I S B N 979-11-5567-348-5

<sup>\*</sup> 연구회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